

CONTENTS

권두칼럼

지방자치 20년이 드러낸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완규 02

현안분석

국제이주의 학력수준별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신상화 06

국제적(cross-border) M&A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개선방안 · 이경근 26

특집·2016 세법개정(안)

2016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정정훈 58

2016 세법개정안 평가 · 이동규 6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국가별 보고서(CbC) 최종규정 발표 외 79

정책흐름

브렉시트에 따른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계획 116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 118

2016년 세법개정안 119

지방자치 20년이 드러낸 문제점과 개선과제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1991년에 민선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었고,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이때를 대부분 수십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이라고들 한다. 그동안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민도나 여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너무 일찍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 어느 사회든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자치시대 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도출해 봄으로써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늠해 보려고 한다.

지방자치시대 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 문제점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재정의 의존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전체 세입(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인 재정자립도가 1995년에 63.5%이었으나, 2015년에는 50.6%로 20년 동안 무려 12.9%p 하락하였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의존재원인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자치단체 스스로 세입 확충노력을 기대만큼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지방세목에 탄력세율제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상당히 드문 것이 현실이고, 설령 적용되었더라도 주로 타 지역 주민에게 세 부담이 돌아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왔다.

둘째, 지역 간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중복투자가 만연되어 있다. 인접지

역 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는 물론, 박물관, 테마파크, 각종 축제 행사 등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벌여놓은 사업들로 인해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수입은 거의 없이 유지관리에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애초에 권역별로 하나씩 세우기로 했던 안전체험관도 세월호 사건 이후 우후죽순으로 만들거나 계획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이러한 시설을 주로 방문하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한 번 방문하면 다시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는 시설의 특성상 권역별로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셋째, 자치단체 간 경쟁과 대립, 지역 이기주의가 심해져 왔다.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이나 대립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최근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에 대전, 세종, 청주, 부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시설을 확충하자는 의견과 애당초 공모사업의 취지대로 새로 짓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 처리시설 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지만 국토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 바로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의 결과로 나온 물질들을 처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NIMBY 현상은 만연해 있는 반면 앞의 철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PIMFY 현상이 도를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채찍보다 당근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근 지역끼리 협력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권장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기대에 못 미친 풀뿌리 민주주의

넷째,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의회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자체 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이 활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장에게 불합리하거나 위법, 불법한 사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그동안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 주민들의 대리인 격인 의회 역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인근 지역끼리 협력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권장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

.....

**지난 20년 동안의
지방자치시대를
돌아보면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주민,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

까지 무수히 많은 사업과 행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

다섯째, 지난 20년 동안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 다양한 재정관리제도들이 도입되어 나름대로 설립 취지에 맞게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구속력이 약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투자심사 시 첨부하는 타당성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엉터리가 많다. 그나마 2015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해당 금액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똑같은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방재정분석의 경우 매년 많은 전문 인력이 동원되어 전 자치단체에 대해 실사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석결과와 파급효과나 영향이 작아 자치단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액의 인상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의 경우 자치단체의 경상일반재원 규모가 늘어나면 한도액도 늘어나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있는바, 실제로 전 자치단체들의 경상일반재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한도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자치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든지, 발행하더라도 한도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한도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한도액 산식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한도액 제도 자체를 없애는 대신, 액수가 크고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하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 동안의 지방자치시대를 돌아보면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주민,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리사욕 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해야 하며,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선량한 만형으로서 조정하고,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국제이주의 학력수준별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신상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제적(cross-border) M&A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개선방안

이경근 ·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국제이주의 학력수준별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hinsan6@kipt.re.kr)

I. 서론

노동력의 국제이주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들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적극적 이민 정책의 필요성과 고학력 노동자의 유출에 따른 기술 혁신의 저하가 그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향후 우리 경제의 생산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으며 그중 해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로 조경엽·강동관(2015)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총인구는 2030년,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생산가능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빠른 증가,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수단의 하나로 이민 정책의 변화를 통한 노동력 수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의 국제이주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로는 고급 인력의 선진국으로의 유출과 그로 인한 기술 혁신의 저하를 꼽을 수 있다. 김진용(2010)은 이공계 박사의 노동시장에서의 유·출입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유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공계 박사의 경우 국내로 유입되는 인력에 비해 국외로 유출되는 인원수가 매우 큰 상황임을 보이며 이공계 박사의 주요 유출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연구환경, 연구에 따른 성취감, 경력개발 등을 꼽았다.

적정 수준의 생산가능인구 유지 그리고 기술 혁신을 위한 고급 인력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과제들은 정책 당국이 외국인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나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정책은 생산가능인구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 정책

은 경제 구조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서만 타당한 정책이 될 것인데, 지금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이들 분야에 종사할 고학력 노동자들의 공급이 필수 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력의 수급에 초 점을 맞추어 마련된 현재의 이민 정책에서 고급 인 력의 수급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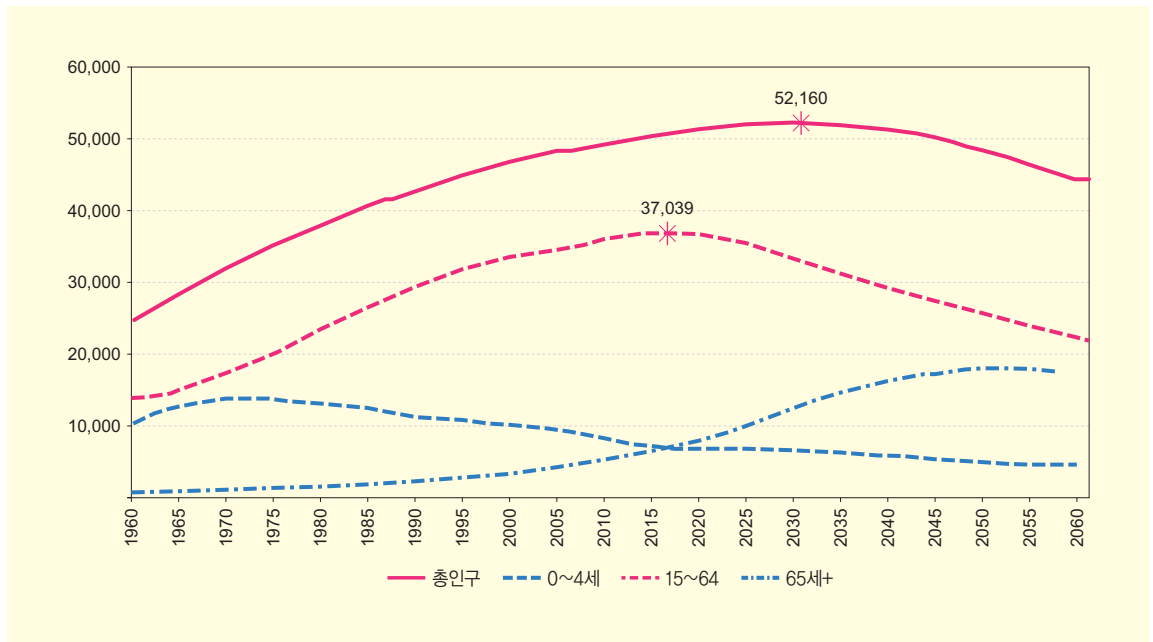
이 연구는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이주자들이 거 주국을 선택하는 데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주자들 의 학력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등록자 및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이주자의 학력수준별 이

“
이 연구는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이주자들이 거주국을 선택하는 데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주자들의 학력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주결정요인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해 정리 하도록 한다.

[그림 1] 연령별 인구추계(1960~2060)

(단위: 천명)



출처: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통계청, 조경엽·강동관(2015, pp. 12.) 재인용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
인구 순유출국이었으나
2006년 이후 순유입국이 되었다.

II.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자 및 유학생 현황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 관련 통계를 간단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외국인 통계는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유학생 통계 등이 존재한다. 외국인 등록자의 현황을 통계청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로 살펴본 뒤,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유학생 통계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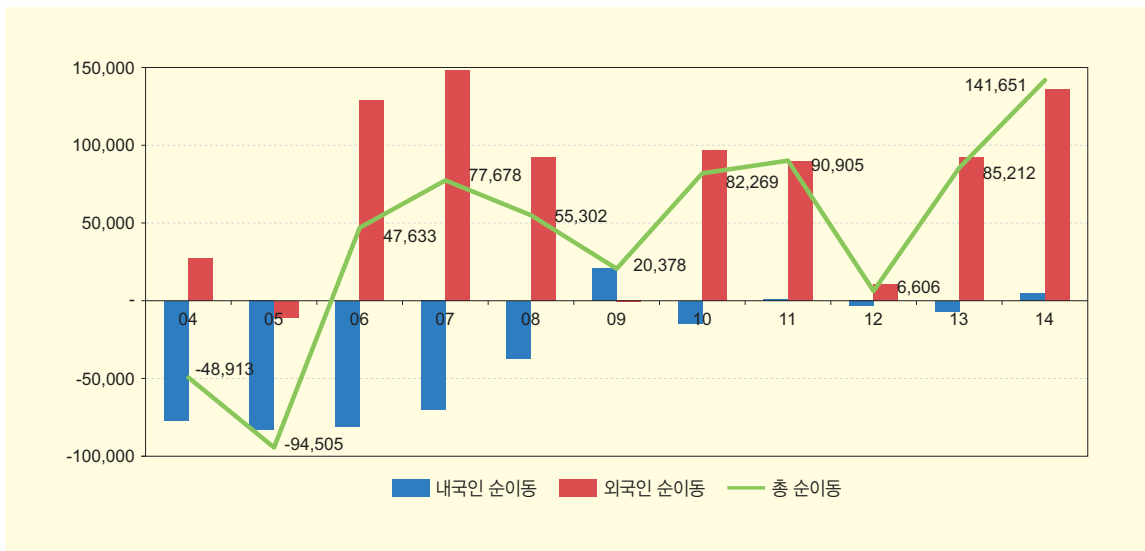
1. 외국인 등록자 현황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 인구 순유출국이었으나 2006년 이후 순유입국이 되었다. 내국인의 순이동은 2005년 약 8만 3천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5천명의 내국인이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순이동의 경우 연도별 편차가 존재하는 편이나 2005년과 2009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꾸준히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5년의 등록 외국인의 수는 약 19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1년 통계의 21만명에서 약 9배 증가한 수치로 기간 중 큰 폭으로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내 인구이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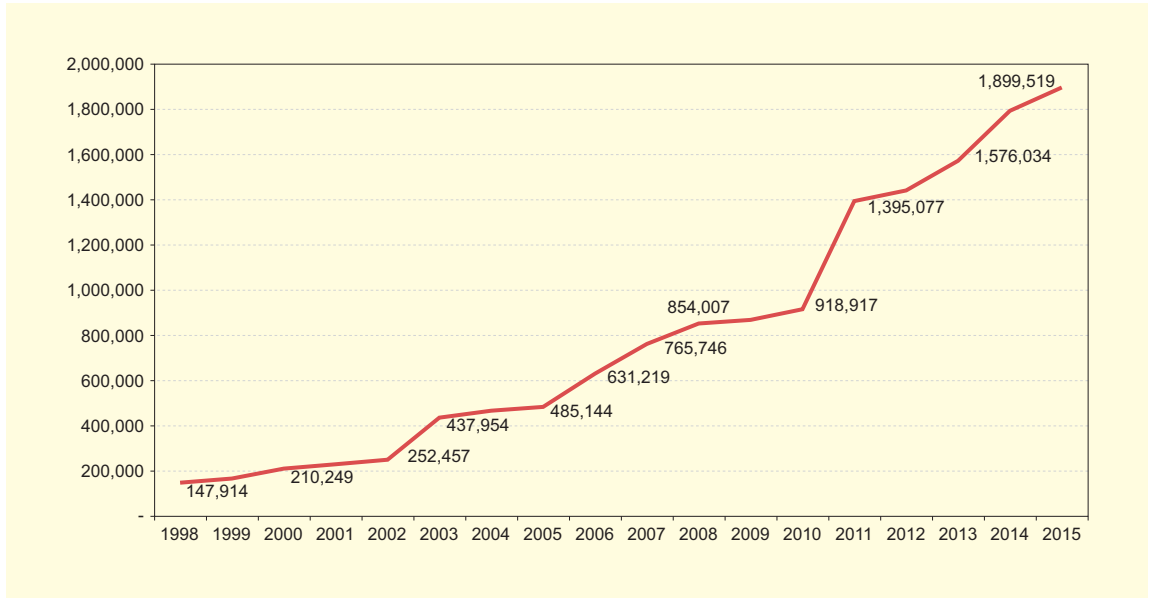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4 (접속일: 2016.05.18.)

[그림 3] 연도별 외국인 등록자 수

(단위: 명)



출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각 연도별 통계월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BoardList.do?strNbodCd=noti0097&strOrgGbnCd=104000&strFilePath=imm/&strRtnURL=IMM_6070&strNbodCdGbn=&strType=&strAllOrgYn=N (접속일: 2016.05.18.)

외국인 등록자 현황을 국적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2015년 기준 중국인이 약 95만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등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경우 2007년 약 42만명 수준에서 2015년 95만명 수준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는데, 2015년 기준 95만명 중 약 66%인 62.6만명가량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분류되었다. 중국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미국인의 경우 2007년 약 2만 6천명 수준에서 2015년 13만 8천명 수준으로 약 5.3배 증가하였다.

“
외국인 등록자 현황을
국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중국인이 약 95만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 국적별 외국인 등록자 수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국(한국계 포함)	421,493	484,674	488,651	505,415	677,954	698,444	778,113	898,654	955,871
한국계	310,485	362,920	363,087	366,154	470,570	447,877	497,989	590,856	626,655
미 국	26,673	28,853	31,379	28,643	132,133	130,562	134,711	136,663	138,660
베트남	67,197	79,848	86,166	98,225	116,219	120,254	120,069	129,973	136,758
일 본	18,073	18,251	18,594	19,448	58,169	57,174	56,081	49,152	47,909
필리핀	42,939	39,372	38,423	29,525	47,542	42,219	47,514	53,538	54,977
태 국	31,745	30,051	28,695	27,572	45,634	45,945	55,110	94,314	93,348
인도네시아	23,698	27,394	25,937	27,447	36,971	38,018	41,599	46,945	46,538
우즈베키스탄	10,916	14,981	15,868	20,766	29,742	34,688	38,515	43,852	47,103
몽 골	20,473	21,201	21,016	21,775	28,634	26,461	24,175	24,561	30,527
타이완	22,047	21,789	21,698	21,490	26,316	30,413	27,698	31,200	30,002
캐나다	7,410	7,450	7,623	7,301	21,812	23,051	23,655	24,353	25,177
스리랑카	12,078	14,256	14,432	17,369	21,554	22,354	23,383	26,057	26,678
캄보디아	4,569	7,015	8,807	11,672	17,320	24,610	31,986	38,395	43,209
방글라데시	7,821	7,656	7,255	9,317	13,465	13,584	13,600	14,644	14,849
네 팔	4,627	5,873	7,371	9,208	13,256	18,908	22,015	26,790	30,185
러시아(연방)	4,682	5,336	5,841	6,088	10,547	11,361	12,804	14,425	19,384
파키스탄	8,047	7,871	7,833	8,328	10,341	10,027	10,423	11,209	11,987
오스트레일리아	N/A	1,762	1,771	1,823	9,711	10,093	12,203	12,468	12,303
인 도	4,261	610	4,131	4,752	7,500	8,317	9,174	10,196	10,414
미얀마	3,222	2,897	3,587	3,809	6,479	9,218	12,678	15,921	19,209
영 국	3,222	3,334	3,828	4,130	6,382	6,814	7,998	7,398	7,275
홍 콩	N/A	N/A	N/A	N/A	5,398	5,958	7,144	10,762	13,506
뉴질랜드	N/A	N/A	N/A	N/A	3,858	4,240	4,310	4,593	4,744
기 타	20,553	23,533	21,730	34,814	48,140	52,390	61,076	71,555	78,906
총 계	765,746	854,007	870,636	918,917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출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각 연도별 통계월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BoardList.do?srNbodCd=noti0097&srOrgGbnCd=104000&srFilePath=imm/&srRtnURL=IMM_6070&srNbodCdGbn=&srType=&srAllOrgYn=N (검색일: 2016.05.18.)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등록자들 중 전문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자들은 2015년 기준 약 6만 2천명으로 전체 등록외국인의 약 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등록자들 중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비자형태는 주재원(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E-6), 특정직업(E-7) 등인데, 이러한 분류 체계를 따르게 되면 전체 외국인 등록자들 중 전문 인력의 비중은 2008년에는 5.8%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3.3%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비자형태별 외국인 등록자 수(전문인력)

(단위: 명, %)

체류목적	비자형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사주재	D-7	1,362	1,469	1,504	1,630	1,543	1,672	1,566	1,477
기업투자	D-8	8,251	7,812	7,482	7,325	7,049	5,978	5,967	5,866
무역경영	D-9	2,822	3,193	4,360	4,432	3,605	8,268	8,732	7,167
교수	E-1	1,589	2,056	2,266	2,474	2,631	2,637	2,664	2,612
회화지도	E-2	19,771	22,642	23,317	22,541	21,603	20,030	17,949	16,144
연구	E-3	2,057	2,066	2,324	2,606	2,820	2,997	3,195	3,145
기술지도	E-4	121	197	233	202	160	222	186	192
전문직업	E-5	530	536	594	629	694	667	645	606
예술행	E-6	4,831	4,305	4,132	4,246	4,528	4,940	5,162	4,924
특정활동	E-7	8,405	8,896	10,712	14,397	17,451	18,213	19,109	20,299
합계		49,739	53,172	56,924	60,482	62,084	65,624	65,175	62,432
총등록 외국인 수		854,007	870,636	918,917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등록외국인수 대비 전문인력 비중		5.8	6.1	6.2	4.3	4.3	4.2	3.6	3.3

출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각 연도별 통계월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BoardList.do?strNbodCd=noti0097&strOrgGbnCd=104000&strFilePath=imm/&strRtnURL=IMM_6070&strNbodCdGbn=&strType=&strAllOrgYn=N (접속일: 2016.05.18.)

2. 유학생 현황

이 절에서는 교육부의 국내외 유학생 통계를 이용하여 유학생 유출입 추이를 살펴본 뒤 국내로 유입되는 유학생들의 국적·유학형태별 현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유학생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향하는 유학생의 수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유학생 수에 비해 지속적으로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국외로 향하는 우리나라 유학생의 수(학위과정)는 2005년 약 10만명에서 2011년 약 16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소폭 감소하여 2015년 약 15만 8천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5년 약 1만 5천명에서 2015년 약 5만 5천명으로 조사되어 유학생의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유학생 유출입 현황

(단위: 명)

	한국 국외 유학생		외국인 국내 유학생		학위과정 순이동
	학위과정	학위+연수	학위과정	학위+연수	
2005	100,716	192,254	15,577	22,526	-85,139
2006	113,735	190,364	22,624	32,557	-91,111
2007	123,965	217,959	32,056	49,270	-91,909
2008	127,000	216,867	40,585	63,952	-86,415
2009	151,566	240,949	50,591	75,850	-100,975
2010	152,852	251,887	60,000	83,842	-92,852
2011	164,169	262,465	63,653	89,537	-100,516
2012	154,178	239,213	60,589	86,878	-93,589
2013	144,087	227,126	56,715	85,923	-87,372
2014	140,560	219,543	53,636	84,891	-86,924
2015	158,415	214,696	55,739	91,332	-102,676

주: *비학위과정은 어학연수, 예비학부 등을 포함

출처: 교육부, 각연도별 한국 국외유학생 현황, 국내 외국인유학생 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www.moe.go.kr/web/100088/ko/board/view.do?bbsId=350&pageSize=10¤tPage=0&encodeYn=&boardSeq=57449&mode=view> (접속일: 2015.05.18.)

국내로 유입되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아시아 유학생의 수는 79,25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약 87%를 차지하였다. 이를 다시 국적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중국 유학생의 수는 약 5만 4천 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약 5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베트남(4.9%), 일본(3.8%), 몽골(3.4%), 미국(3.2), 대만(2.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베트남	러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캐나다	인도	기타	합계
2003												
인원수	5,607	2,486	631	575	367	304	208	156	148	145	1,687	12,314
비중	45.5	20.2	5.1	4.7	3.0	2.5	1.7	1.3	1.2	1.2	13.7	100.0
2004												
인원수	8,677	2,232	688	586	457	314	356	270	165	183	2,904	16,832
비중	51.6	13.3	4.1	3.5	2.7	1.9	2.1	1.6	1.0	1.1	17.3	100.0
2005												
인원수	12,312	2,638	807	766	705	369	510	291	164	276	3,688	22,526
비중	54.7	11.7	3.6	3.4	3.1	1.6	2.3	1.3	0.7	1.2	16.4	100.0
2006												
인원수	19,160	3,621	936	1,216	1,179	430	809	377	199	303	4,327	32,557
비중	58.9	11.1	2.9	3.7	3.6	1.3	2.5	1.2	0.6	0.9	13.3	100.0
2007												
인원수	31,829	3,531	1,037	1,173	2,242	421	1,309	425	272	389	6,642	49,270
비중	64.6	7.2	2.1	2.4	4.6	0.9	2.7	0.9	0.6	0.8	13.5	100.0
2008												
인원수	44,746	3,324	1,158	1,481	1,817	480	2,022	501	313	449	7,661	63,952
비중	70.0	5.2	1.8	2.3	2.8	0.8	3.2	0.8	0.5	0.7	12.0	100.0
2009												
인원수	53,461	3,931	1,256	1,998	1,787	537	2,724	560	425	471	8,800	75,850
비중	70.5	5.2	1.7	2.5	2.4	0.7	3.6	0.7	0.6	0.6	11.6	100.0
2010												
인원수	57,783	3,876	1,419	2,193	1,914	621	3,333	604	517	529	11,053	83,842
비중	68.9	4.6	1.7	2.6	2.3	0.7	4.0	0.7	0.6	0.6	13.2	100.0
2011												
인원수	59,317	4,520	1,574	2,707	2,325	696	3,699	606	644	631	12,918	89,537
비중	66.2	5.0	1.8	3.0	2.6	0.8	4.1	0.7	0.7	0.7	14.3	100.0
2012												
인원수	55,427	4,093	1,510	2,665	2,447	623	3,797	735	655	615	14,311	86,878
비중	63.8	4.7	1.7	3.1	2.8	0.7	4.4	0.8	0.8	0.7	16.5	100.0
2013												
인원수	50,343	4,344	1,690	2,668	2,998	710	3,902	771	733	662	17,102	85,923
비중	58.6	5.1	2.0	3.1	3.5	0.8	4.5	0.9	0.9	0.8	19.9	100.0
2014												
인원수	48,109	3,806	1,837	2,442	3,166	788	3,118	874	649	753	19,349	84,891
비중	56.7	4.5	2.2	2.9	3.7	0.9	3.7	1.0	0.8	0.9	22.8	100.0
2015												
인원수	54,214	3,492	1,994	2,968	4,451	895	3,138	991	881	899	17,409	91,332
비중	59.4	3.8	2.2	3.2	4.9	1.0	3.4	1.1	1.0	1.0	19.1	100.0

출처: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 각 연도별 통계월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BoardList.do?strNbodCd=noti0097&strOrgBnCd=104000&strFilePath=imm/&strRtnURL=IMM_6070&strNbodCdGbn=&strType=&strAllOrgYn=N (검색일: 2016.05.18)

외국인 유학생들의 분포를 유학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수과정과 학사과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약 3만 5천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연수과정에 있으며 약 3만 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사 학위를 위해 국내에 이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사 및 박사급 유학생의 경우 전체 유학생 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석사 유학생의 수는 2008년 9,143명에서 2015년 16,441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으며 박사 유학생의 수는 2008년 3,245명에서 2015년 6,326명으로 약 1.9배 증가하여 다른 유학 형태들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유학형태별 유학생 현황

(단위: 명)

연도	학사	석사	박사	기타연수	합계
2008	28,197	9,143	3,245	23,367	63,952
2009	36,525	10,697	3,369	25,259	75,850
2010	43,709	12,480	3,811	23,842	83,842
2011	44,641	14,516	4,496	25,884	89,537
2012	40,551	15,399	4,639	26,289	86,878
2013	35,503	16,115	5,097	29,208	85,923
2014	32,101	15,826	5,709	31,255	84,891
2015	32,972	16,441	6,326	35,593	91,332

주: *기타연수는 어학연수를 포함함

출처: 교육부, 각 연도별 국내 외국인유학생현황, <http://www.moe.go.kr/web/100099/ko/board/list.do> (접속일: 2016.05.18.)

〈표 6〉 유학형태/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

2015	학사		석사		박사		연수		합계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아시아	30,584	93	13,775	84	5,549	88	29,349	82	79,257	87
아프리카	367	1	949	6	275	4	414	1	2,005	2
오세아니아	119	0.4	88	1	26	0.4	153	0.4	386	0.4
북미	1,193	4	943	6	314	5	1,663	5	4,113	5
남미	218	1	218	1	32	1	395	1	863	1
유럽	491	1	468	3	130	2	3,619	10	4,708	5
합계	32,972	36	16,441	18	6,326	7	35,593	39	91,332	100

출처: 교육부, 2015 국내 외국인유학생현황, <http://www.moe.go.kr/web/100099/ko/board/list.do> (접속일: 2016.05.18.)

III. 이민 거주국 결정 요인 분석

높은 학력을 지닌 외국인 고급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것이 하나의 정책 목표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할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OECD의 국제이주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학력 노동자의 거주국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¹⁾

이민자들의 거주국 선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출생국에서 새로운 거주국으로의 이주를 통한 기대소득의 증대, 거주국 이민 정책의 호혜성, 기존에 진출한 이민자 집단, 출생국과 거주국 간의 문화적 동질성, 이민에 따른 비용 등이 고학력 이민자들의 거주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출생국에 비해 거주국에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거주국의 이민 정책이 고급 인력에 보다 호혜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기존에 특정 거주국에 자국 이민자가 많이 나가 있고, 문화적으로 유사하며, 이민에 따른 비용이 낮을수록 이민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
OECD의 국제이주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학력 노동자의 거주국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

분석된 것이다.

1. 분석 자료

이민자들의 국제적 분포는 다양한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UN 이민 통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Demographic Yearbook data collection system을 통해 수집한 총 45개국 간의 이민자 이동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Doquier and Marfouk (2006), Docquier et al.(2009), Artuc et al.(2015)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자료는 OECD의 자료와 각국의 Census, Labor Force Survey, IPUMS International 등의 자료를 결합하여 재가공한 통계이다. 마지막으로,

〈표 7〉 이민의 결정요인

연구	분석대상국	사용데이터	주요인
Van Dalen et al.(2005)	북아프리카 5개국	서베이 자료	- 기대소득 증가
Antecol et al.(2003)	호주, 캐나다, 미국	3국의 Census 자료	- 출생국과의 거리 - 기존의 이민자 집단 - 이민정책
McKenzie and Rapoport(2010)	미국-멕시코	서베이 자료	- 기존의 이민자 집단의 네트워크 효과
Belot and Hatton(2012)	OECD 국가로의 이민	Data from - Doquier and Marfouk (2006) - Docquier et al.(2009)	- 문화적 동질성 - 거리 - 출생국의 빈곤도

1) 이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OECD 자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이주민뿐만 취업비자로 머물고 있는 이주민 또한 포함하고 있음

“
대개의 국가들의 Census 자료에서
남한과 북한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계자료를 수집하기에,
해당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 출신의
해외 이민자 정보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OECD에서는 Database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DIOC) 자료를 발행하고 있다.

UN 이민 통계는 45개국 간의 2015년까지의 이민자 이동 정보를 담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이민자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Doquier and Marfouk(2006), Docquier et al.(2009), Artuc et al.(2015)의 자료 역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으나 1990년, 2000년의 2개 연도의 이민자 수 통계만 존재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OECD의 DIOC 자료는 UN 자료에 비해 더 많은 출생국을 포괄하고 있고, Doquier and Marfouk(2006), Docquier et al.(2009), Artuc et al.(2015)의 자료에 비해 비교적 최신의 자료(2010/2011 Census)를 포괄하고 있다는 자료상의 장점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 DIOC 자료 중 가장 최근 연도인 2010/2011 Censu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²⁾

OECD DIOC 자료에는 총 39개 거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정보가 들어있다. 39개 거주국은 대부분 OECD 국가들이나 러시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등의 비OECD 7개국의 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 통계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이민 통계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 역시 출생국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현 분석에서 사용하는 B타입 DIOC 자료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이 자료에 수록된 출신국들은 총 221개국인데, 우리나라는 출신국의 하나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대개의 국가들의 Census 자료에서 남한과 북한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계자료를 수집하기에, 해당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 출신의 해외 이민자 정보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표 8〉 거주국 목록(DIOC 2010/2011)

국가	OECD 여부	국가	OECD 여부
Australia	1	New Zealand	1
Austria	1	Norway	1
Belgium	1	Poland	1
Canada	1	Portugal	1
Chile	1	Slovakia	1
Czech Republic	1	Slovenia	1
Denmark	1	Spain	1
Estonia	1	Sweden	1
Finland	1	Switzerland	1
France	1	Turkey	1
Germany	1	United Kingdom	1
Greece	1	United States	1
Hungary	1	Bulgaria	0
Iceland	1	Cyprus	0
Ireland	1	Latvia	0
Israel	1	Lithuania	0
Italy	1	Malta	0
Luxembourg	1	Romania	0
Mexico	1	Russia	0
Netherlands	1		

출처: OECD DIOC(2010/2011), 저자 작성

2) DIOC 자료는 포괄하는 정보 구성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로 제공되는데, 이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B타입이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특정 시점에 각 거주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량(stock)을 보고하고 있으며 연도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량을 유량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거주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개인 정보에 거주기간의 정보가 존재하기에 이를 활용하여 특정 기간 동안의 이동량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 내에서 가장 최근인 5년 이내, 즉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주한 이민자들에 한정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06~2010년)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향한 거주국은 미국으로 총 126개국으로부터 약 36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향한 거주국은 영국,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순인데 구체적인 거주국별 유입 이민자 수 정보는 <표 9>에 정리하였다.

“
최근 5년간(2006~2010년)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향한 거주국은
미국으로 총 126개국으로부터
약 36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향한
거주국은 영국,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순이다.
”

상위 8대 거주국들의 이민자들을 출생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중남미 지역에서 약 44%, 아시아 지역에서 약 38%가 유입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지역 출생의 이민자 유입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인근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전체 이민자 유입의 약

〈표 9〉 주요 거주국의 이민자 유입(2006~2010년)

(단위: 명)

국가	이민자 수	국가	이민자 수
United States	3,613,782	Turkey	288,107
United Kingdom	2,378,555	Germany	235,499
Russia	1,717,183	Greece	232,797
Spain	1,476,315	Norway	196,610
Italy	1,051,752	Austria	173,845
Canada	934,010	New Zealand	172,032
Australia	833,558	Ireland	137,396
France	657,111	Netherlands	134,602
Switzerland	420,728	Denmark	114,687
Belgium	382,637	Mexico	102,331
Sweden	347,935	Portugal	95,557

출처: OECD DIOC, 저자 작성

70%를 차지하며, 스페인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지역과 식민지였던 중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8대

거주국 중 캐나다만이 인근 지역이 아닌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주요 거주국의 출생국 지역별 이민자 수(2006~2010년)

(단위: 명, %)

국가	출생국 지역 ¹⁾	이민자 수	비중	국가	출생국 지역 ¹⁾	이민자 수	비중
United States	SCAC	1,597,080	0.44	Italy	EURO	600,694	0.57
	ASIA	1,356,911	0.38		ASIA	179,228	0.17
	EURO	344,612	0.10		AFRI	168,451	0.16
	AFRI	210,766	0.06		SCAC	96,085	0.09
	NOAM	77,745	0.02		NOAM	6,100	0.01
	OCEA	26,668	0.01		OCEA	1,194	0.00
United Kingdom	EURO	1,081,140	0.45	Canada	ASIA	541,290	0.58
	ASIA	788,872	0.33		EURO	132,105	0.14
	AFRI	282,498	0.12		SCAC	116,275	0.12
	NOAM	87,154	0.04		AFRI	114,130	0.12
	SCAC	72,443	0.03		NOAM	23,560	0.03
	OCEA	66,444	0.03		OCEA	5,590	0.01
	UNK	4	0.00		UNK	1,060	0.00
Russia	ASIA	1,201,169	0.70	Australia	ASIA	485,798	0.58
	EURO	466,636	0.27		EURO	150,663	0.18
	UNK	42,316	0.02		OCEA	89,973	0.11
	AFRI	5,149	0.00		AFRI	64,985	0.08
	SCAC	966	0.00		NOAM	22,265	0.03
	NOAM	744	0.00		SCAC	19,874	0.02
	OCEA	203	0.00				
Spain	SCAC	629,985	0.43	France	EURO	261,673	0.40
	EURO	532,590	0.36		AFRI	259,431	0.39
	AFRI	230,270	0.16		ASIA	81,649	0.12
	ASIA	72,605	0.05		SCAC	38,070	0.06
	NOAM	9,210	0.01		NOAM	13,999	0.02
	OCEA	990	0.00		OCEA	2,289	0.00
	UNK	665	0.00				

주: 1) SCAC: 중남미, ASIA: 아시아, EURO: 유럽, AFRI: 아프리카, NOAM: 북미, OCEA: 오세아니아, UNK: 출생지 정보 불명
출처: OECD DIOC, 저자 작성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출신 이민자 수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영국, 러시아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 내 중국 및 일본 등의 거주국이 누락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이 구분되지 않아 실제 우리나라 출신 이민자들의 거주국 분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한국 이민자의 주요 거주국(2006~2010년)

(단위: 명, %)

거주국	이민자 수	비중
United States	114,540	0.61
Canada	22,235	0.12
Australia	20,385	0.11
United Kingdom	8,699	0.05
Russia	7,064	0.04
New Zealand	4,782	0.03
France	3,504	0.02

출처: OECD DIOC, 저자 작성

이 자료에는 거주국-출생국별 이민자 수 정보 이외에도 교육수준, 성별, 거주국에서의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교육수준 변수는 이민자들을 크게 대학교 이상(학부 이상), 중등교육, 그리고 초등교육의 세 가지 교육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변수를 활용하여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의 교육 수준별 거주지 선택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데 이처럼 교육 수준별로 이민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이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소득 및 이민의 비용이 이민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거주국-출생국 사이의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가 유입되는 이

“
이 연구에서는 거주국-출생국 사이의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가 유입되는 이민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민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국가별 소득 수준을 통제할 변수를 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별 소득수준은 1인당 GDP 자료를 사용한다. 하지만, 1인당 GDP의 경우 교육수준별 임금수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선행 연구들은 지니 계수와 1인당 GDP 자료를 활용하여 분위별 소득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연구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별 분위 소득을 추정하였다.

우선, 소득변수를 Y , 지니 계수를 g , 1인당 GDP를 $\bar{Y}$ 로 표현하고 특정 국가의 소득 분포가 lognormal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ln(Y) \sim N(\mu, \sigma^2)$$

다음으로, Aitchison & Brown(1963)에서 도출한 지니계수 g 와 σ 사이의 다음과 같은 관계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g = 2\Phi\left(\frac{\sigma}{\sqrt{2}}\right) - 1, \Phi \text{는 표준정규분포의 CDF}$$

lognormal 분포 가정에 따라 $E(Y) = \bar{Y} = \exp(\mu + \sigma^2/2)$ 의 식이 성립하게 되고, z 분위 소득 Y_z 는 다음의 도출과정을 통해 1인당 $gdp(=\bar{Y})$ 와 지니계수를 통해 도출한 σ 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begin{aligned} Y_p &= \exp(\mu + \sigma \Phi^{-1}(p)) \\ &= \exp(\mu + \sigma z_p) \\ &= \exp(\mu) \exp(\sigma z_p) \\ &= \bar{Y} \exp\left(\sigma z_p - \frac{1}{2} \sigma^2\right) \end{aligned}$$

이 관계식을 통해 OECD 자료에 존재하는 모든 출생국과 거주국들에 대한 20/50/80분위의 소득 수준을 추정해내고, 이를 교육수준별 임금수준을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출생국과 거주국의 80분위 소득의 격차를 이민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비슷하게,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20분위 소득의 격차를 사용하였으며, 중간 교육 수준의 집단의 경우 50분위 소득의 격차를 사용하였다.³⁾ 20분위와 80분위를 각각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다소 임의적일 수는 있으나 이를 90/30분위 혹은 85/25분위로 수정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여도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교육수준별 소득수준 추정법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별 교육수준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즉, 선진국 대학에서 학부수준의 학위를 취득한 개인과 후진국 대학에서 동일한 학위를 취득한 개인이 동등하게 비교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OECD 자료의 응답자 중 거주국으로 이주 후 학위를 취득한 응답자들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학위를 취득한 국가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가정들 없이 해당 자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것은 또 다른 자료상의 왜곡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계산한 상위 10대 거주국 및 상위 10대 출생국의 분위별 소득 수준은 <표 12>에서 정리하였다. 이 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거주국의 분위별 소득이 출생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령, 미국 내 최대 이민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50분위 소득이 12,481달러로 미국의 42,789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분위 소득격차에 비해 80분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 노동자일수록 이민으로 인한 기대임금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변수들 이외에 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CEPII)에서 제공하는 양 국가 사이의 거리, 언어의 동질성, 그리고 과거 식민지 관계 여부 등의 정보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양 국가간의 거리는 log를 취한 형태로 투입하여 거리가 이민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설계하였으며, 언어의 동질성의 경우 공용어 외의 언어까지 포괄하여 양국 사이에 동일한 언어가 존재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 식민지 관계 또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할 경우를 1, 그렇지 않을 경우를 0으로 표시하여 추정식에 반영하였다.

3) 저소득층을 20분위, 고소득층을 80분위로 구분하는 방식은 Grogger and Hanson(2011)에서도 사용된 바 있음

〈표 12〉 주요 거주국별 및 출생국의 분위별 소득

(단위: 달러)

주요 거주국	20분위	50분위	80분위	최대 출생국 ¹⁾	20분위	50분위	80분위
United States	27,154	42,789	67,429	Mexico	7,251	12,481	21,483
United Kingdom	22,181	32,468	47,526	Poland	11,121	16,019	23,076
Russia	10,404	16,410	25,884	Kazakhstan	9,327	12,753	17,437
Spain	20,370	29,671	43,217	Romania	8,506	12,107	17,232
Italy	20,512	29,653	42,866	Romania	8,506	12,107	17,232
Canada	23,994	34,661	50,069	Philippines	2,461	3,997	6,492
Australia	24,703	36,312	53,378	Indonesia	2,747	4,018	5,875
France	21,538	30,600	43,475	Morocco	2,656	4,165	6,533
Switzerland	29,442	42,402	61,065	Germany	23,052	32,553	45,970
Belgium	24,700	33,704	45,992	Morocco	2,656	4,165	6,533

주: 1) 각 거주국별 이민자들의 최대 출생국을 의미함. 가령, 미국의 경우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
출처: 저자 작성

2. 분석 모형 및 결과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begin{aligned}
 &immigrants_{s,d,i} \\
 &= \beta_0 + \beta_1 wgap_{s,d,i} + \beta_2 distance_{s,d} + \\
 &\quad \beta_3 language_{s,d} + \beta_4 colony_{s,d} + D_{edu} + \\
 &\quad interactions(D_{edu}) + D_d + D_{region} + \\
 &\quad error_{s,d,i}
 \end{aligned}$$

이 추정식의 각 변수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immigrants는 출생국(source; s)으로부터 거주국(destination; d)으로 이동한 교육수준 i 의 인원수를 인구로 나눈 값(단위: 1백만명)
- wgap은 교육수준 i 별 출생국 s와 거주국 d 사이의 임금격차(\$)
- distance는 s국과 d국 수도 사이의 물리적 거리의 로그값으로 이민에 따른 비용을 대리함
- language는 s국과 d국이 언어적 유사성이 있

을 경우 1 아니면 0 값을 갖는 변수로 문화적 동질성을 대리함

- colony는 과거 양국 사이의 식민지 경험의 존재를 나타내는 변수로 문화적 동질성을 대리함
- D_{edu} 는 관측치별 교육수준을 의미(1~3; 1 = 저학력, 3 = 고학력)
- wgap, distance, language, colony 등의 변수들과 D_{edu} 사이의 교차항 또한 모형에 포함
- 이밖에, 거주국별 더미변수와 출생국의 지역별(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더미변수를 포함됨

위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 양국가 간의 거리, 식민지 관계, 기대소득이 유의한 결정 요소로 추정되었다. 양국가 사이의 물리적 거리의 로그값은 1단위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 1백만명당 이민자의 수를 160명(고학력)에서 224명(저학력 및 중학력)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가 사이

에 과거 식민지 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구 1백만명당 이민자 수가 약 421명(저학력)에서 1,352명(중학력)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언어의 동질성의 경우 저학력과 중학력자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으나 고학력자의 경우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수준별 기대소득의 경우, 연간 기대소득이 10,000달러 증가함에 따라 인구 1백만명당 이민자 수가 약 30명(고학력 그룹)에서 110명(저학력 그룹)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양국가간의 거리, 식민지 관계 등의 변수들의 계수값에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준이다.

〈표 13〉 추정 결과

VARIABLES	(1) All Src	(2) Src=OECD	(3) Src= Non-OECD
edu_lfs==2	-30.083 (127.409)	-134.621 (108.653)	174.981 (213.088)
edu_lfs==3	-475.512*** (127.046)	-135.095 (108.081)	-1,036.191*** (213.414)
wage gap	0.011*** (0.001)	0.005*** (0.001)	0.006** (0.003)
(edu_lfs==2)*wgap	-0.006*** (0.001)	-0.002* (0.001)	-0.006*** (0.002)
(edu_lfs==3)*wgap	-0.008*** (0.001)	-0.003*** (0.001)	-0.005** (0.002)
log(distance)	-224.451*** (13.554)	-152.990*** (13.016)	-315.872*** (21.448)
(edu_lfs==2)*ldistance	10.330 (15.548)	20.200 (13.516)	-6.707 (25.158)
(edu_lfs==3)*ldistance	64.280*** (15.490)	22.895* (13.435)	125.774*** (25.174)
language	5.504 (35.377)	-44.909 (41.306)	39.720 (46.768)
(edu_lfs==2)*language	-4.127 (47.291)	169.225*** (54.627)	-57.836 (62.491)
(edu_lfs==3)*language	92.106* (47.007)	215.140*** (54.368)	35.851 (62.174)
colony	420.965*** (55.650)	-17.831 (72.947)	520.773*** (70.742)
(edu_lfs==2)*col	932.729*** (76.567)	199.663** (100.659)	1,124.319*** (96.914)
(edu_lfs==3)*col	142.104* (76.604)	569.266*** (101.348)	67.567 (96.795)

〈표 13〉의 계속

VARIABLES	(1) All Src	(2) Src=OECD	(3) Src= Non-OECD
sex	2.229 (20.207)	-0.300 (22.533)	1.621 (26.772)
Observations	13,872	4,222	9,650
R-squared	0.135	0.201	0.159
Country FE	YES	YES	YES
Region FE	YES	YES	YES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고학력 이민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추정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고학력 이민자들의 거주국 결정에 있어서의 특성들을 찾아낼 수 있다. 우선, 고학력자들의 경우 저학력자들에 비해 기대임금의 향상 폭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임금 향상이 거주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게 추정되었다. 〈표 14〉는 표본에서의 학력별 기대임금 증대치를 정리하고 있는데, 고학력 노동자의 평균 기대임금 증대치는 약 2만 6천달러인 반면 저학력 집단의 평균 기대임금 증대치는 약 1만 4천달러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추정 결과 ($\text{edu_lfs}=3$)* wgap 의 계수값은 (-)로 나타나 고학력 근로자가 저학력 근로자에 비해 기대임금 증대치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4〉 학력별 기대임금 증대치

학력수준	평균(기대임금 증대치)	표준편차
저학력($\text{edu_lfs}=1$)	14161.96	182.1215
중학력($\text{edu_lfs}=2$)	18624.49	253.3875
고학력($\text{edu_lfs}=3$)	26020.05	361.1226

출처: 저자 작성

다음으로, 고학력 근로자의 경우 다른 학력 집

단에 비해 이민 비용(국가간 거리 변수로 대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국가 간 거리의 증가는 이민자 수의 감소를 가져왔으나, 이민 비용 증대에 따른 이민자 수 감소의 영향이 고학력 근로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적 유사성을 대리하는 과거 식민지 관계 여부와 언어의 동질성 여부를 살펴보면, 고학력 근로자들이 문화적 유사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식민지 관계 여부는 저학력 집단에 비해 고학력 집단에서 더 큰 계수값을 지니고 있으며 언어의 동질성의 경우 고학력 집단에서만 유의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언어의 동질성이 고학력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저학력 이민자들과 고학력 이민자들이 거주국 선택 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OECD 이민 통계를 바탕으로 2006~2010년까지의 이민자들의 이동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 근로자들의 거주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
**고학력 근로자들의 거주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인센티브 요인
 (기대소득의 증대)에 비해
 경제적 디스인센티브(이민비용의 증대) 및
 문화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경제적 인센티브 요인(기대소득의 증대)에 비해 경제적 디스인센티브(이민비용의 증대) 및 문화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저학력 근로자들에 비해 고학력 근로자들에서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게 나타났으나 이민비용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문화적 요인을 대리하는 언어의 유사성 및 식민지 관계의 존재는 고학력 집단에서 저학력집단에 비해 더 강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학력 노동자 유치에 있어 경제적 유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 않은 반면 비경제적 유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통계에서 지리·문화적으로 가까운 아시아국들로부터의 이민자 수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과 잘 부합한다. 전체 등록 외국인 중 대다수를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유학 형태에서 대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었다. 즉,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고학력 이민자의 수급에 있어 우리나라와 지리·문화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언어적 동질성을 지닌 상대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국가들 역시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국한되기에,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고학력 이민자 유치 정책은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고학력 이민자를 증대시키는 정책 대안으로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위 후 취업으로의 연계를 촉진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유학생들, 특히 박사과정생들의 경우 다년간 국내에 체류하기에 해외에서 박사를 취득한 다른 인력들에 비해 언어·문화적 장벽이 상당히 낮고, 우리나라로 이민하는 것에 따른 이민의 비용 역시 매우 낮은 특징을 지닌다. 이공계 박사학위에 한정된 연구이기는 하나, 홍성민(2015)은 이공계 박사급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유입 대비 유출의 정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이공계에 진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유인책이 고학력 이민자 유입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I.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이민자 및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고, OECD DIOC 자료를 활용하여 이민자의 거주국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민자의 교육 수준별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고학력 이민자들의 거주지 결정에 있어 기대소득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여타의 지리·문화적 요인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해외 고학력자들을 국내로 유인하는 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학력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지리·문화적 요인이

통제된 고학력 외국인들로 볼 수 있기에 고학력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위 후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고학력 이민자 유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고학력 이민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비해 고학력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잔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웅, 『국내 이공계 박사의 해외유출 특성 및 요인 분석』, 이슈페이퍼2010-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조경엽·강동관,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14-21, 한국경제연구원, 2015.

홍성민, 『2015년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미래창조과학부 용역보고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Aitchison, J., & Brown, J. A. C. (1963), *The lognormal distribution*.

Antecol, H., Cobb-Clark, D. A., & Trejo, S. J. (2003), "Immigration policy and the skills of immigrants to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8(1), pp. 192-218.

Artuç, E., Docquier, F., Özden, Ç., & Parsons, C. (2015), "A global assessment of human capital mobility, the role of non-OECD destinations," *World Development*, 65, pp. 6-26.

Belot, M. V. K., & Hatton, T. J. (2012), "Immigrant Selection in the OECD*,"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4(4), pp. 1105-1128.

Docquier, F., Lowell, B. L., & Marfouk, A. (2009), "A gendered assessment of highly skilled emigr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2), pp. 297-321.

Frederic, D., & Marfouk, A. (2005), "International Migration by Education Attainment: 1990-2000-Release 1.1,"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Grogger, J., & Hanson, G. (2011), "Income Maximization and the selection and sorting of international migrant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5, pp. 42-57.

McKenzie, D., & Rapoport, H. (2010), "Self-selection patterns in Mexico-US migration: the role of migration network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4), pp. 811-821.

Van Dalen, H. P., Groenewold, G., & Schoorl, J. J. (2005), "Out of Africa: what drives the pressure to emigrat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8(4), pp. 741-778.

교육부, <http://www.moe.go.kr>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e-나라지표, www.index.go.kr

국가통계포털, kosis.kr

국제적(cross-border) M&A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개선방안*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kygelee@yulchon.com)

I. 머리말

최근 정부는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M&A관련 세제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즉,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M&A관련 세제 등 제도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정책방안을 포함시켰고 그 후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전체 국제적 M&A 중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가별 M&A 비중의 평균을 보면 전 세계 평균이 34.6%이고 선진국 평균이 36.2%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3.3%로, 미국 34.4%, 중국 35.8%, 일본 23.5%에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¹⁾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폭넓게 국제적(cross-border) M&A에 대해 과세특례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 M&A 발생의 정도와 세제지원책은 일견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국제적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 간의 M&A와 유사한 수준의 과세특례가 주어질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조정 관련 세제는, 내국기업 간의 M&A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적 M&A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세특례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국제적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 본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15 세정전문가 네트워크」에 게재된 논문을 저자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1)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2012), 「우리나라 M&A 및 Greenfield FDI의 동향·특징 및 시사점」, p. 13.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선 국제적(cross-border) M&A투자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적 M&A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구조조정세제를 국제적 M&A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연장선에서 국제적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012년도부터는 다시 M&A형
외국인투자가 증대하고 있는바,
2012년에 33억달러,
2013년에 42억달러,
2014년에는 약 49억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외국인투자의 48.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II. 국제적 M&A투자의 현황 및 중요성

1. 우리나라의 국제적 M&A투자의 현황

19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가운데 M&A형 투자는 거의 없었으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M&A형 투자가 급증해 1998년과 1999년도에는 5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 그 후 2002년까지 M&A형 외국인투자규모는 매년 20억~30억달러를 기록하다가 2004년에는 61.7억달러의 신장세를 보여 총외국인투자의 48.2%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 후 M&A형 외국인투자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19.1억달러로

서 총외국인투자의 22.2%까지 하락하였다.²⁾ 그러나 2012년도부터는 다시 M&A형 외국인투자가 증대하고 있는바, 2012년에 33억달러, 2013년에 42억달러, 2014년에는 약 49억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외국인투자의 48.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기업에 대한 M&A의 실적 및 그 동향을 살펴보자. 199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기업의 국제적 M&A 실적은 1년에 평균 1건도 기록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1990년에 국제적 M&A를 위한 투자금액이 1백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계속적으로 투자한 금액과 신규투자 법인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7년의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1997년과 1998년에는 그 때까지의 최고 투

〈표 1〉 최근 우리나라 유형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A형	금액	2,880	1,901	1,466	3,475	4,119	4,772
	비중	42.6	35.0	22.2	32.5	42.0	48.8
그린필드형	금액	3,876	3,535	5,140	7,225	5,683	5,001
	비중	57.4	65.0	77.8	67.5	58.0	51.2
금액합계		6,756	5,437	6,607	10,701	9,802	9,773

2) 김영태, 강삼모,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2.8, p.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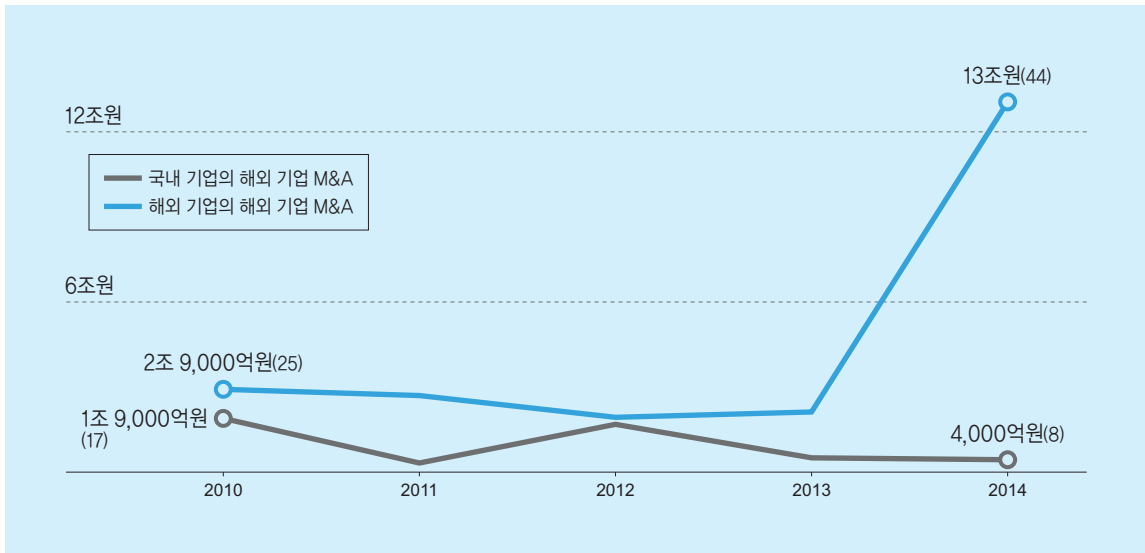
자금액을 기록했다. 외환위기의 타격으로 1999년에는 과거만큼 적극적인 국제적 M&A가 어렵게 되면서 투자금액과 신규법인 수가 모두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 경기가 호황에 진입하면서 과거의 투자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 결과 2007년과 2008년에는 한국 기업의 국제적 M&A 현황은 투자금액과 법인 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국제적 M&A도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수행하였던 국내 M&A들은 글로벌 경기악화 및 유동성 위기로 인해 인수기업에 큰 피해를 주게 되었고 그 결과 M&A 거래가 점차 신중해지고 거래 규모는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국제적 M&A투자의 중요성

국제적 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는 진출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진출하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국에 있는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합병(M&A)형 투자이다. 일반적으로 그린필드형 투자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투자금액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관련 효과가 큰 데 반하여, M&A형 투자는 경영권만 바뀌면서 단지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창출 등 경제적 외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감안하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먼저 ‘외국인투자자의 내국법인 M&A’ 측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그린필드형과

[그림 1] 우리나라 유형별 M&A 추이



주: () 안은 건수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8/2015110802543.html

M&A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대신 외환은행과 같은 은행을 한국에 설립하면서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한국의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때도 이러한 M&A를 할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뿐 당시에 M&A를 할 것인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의 투자를 할 것인가는 처음부터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다.

둘째, 장기적으로 볼 때, M&A형 투자와 그린필드형 투자 모두 비슷한 투자형태를 보여준다. 실제로 M&A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추가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그린필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보다 고용창출, 생산량 증가 등 관련 경제적 외부효과 면에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여 준 경우도 많았다.

셋째, M&A 투자인 경우 단지 해외자금의 유입뿐 아니라 관련기술, 첨단경영, 그리고 시장개척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함께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GM사는 우리나라의 대우자동차를 인수해서 경영 합리화, 신기술 도입, GM의 기존 글로벌 네트워크에의 통합 등을 통해 대우자동차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였고,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이상과 관련된 사례들이 보여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조건 M&A형보다 그린필드형 투자가 투자 유치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살펴서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
무조건 M&A형보다 그린필드형 투자가
투자 유치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를 살펴서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다음으로 '내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외국기업과의 M&A' 측면에서 M&A형 국제투자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최근 세계 경제의 개방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서는 M&A형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 국제적(cross-border) M&A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이 아웃바운드 M&A를 통해 획득한 유형·무형의 자산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규모의 경제는 다시 국내로의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인바운드 M&A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국내로 유입된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거나 창업자가 자유로이 투자회수(즉, exit)를 할 수 있도록 기능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연쇄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기업의 해외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경제영토의 국경이 무의미해진 작금의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막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³⁾

3) 김철중,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제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pp. 65~66.

“
국제적 M&A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들은,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세법이나 조세조약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보완 또는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물론 국제적 M&A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자본은 충분하나 기술이 부족한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인수하여 고도 기술을 유출해 가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내국기업이 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기업을 인수한 후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거나 인수한 외국기업에 과도하게 소득을 유보한 후 국내에는 오랫동안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들은,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세법이나 조세조약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보완 또는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M&A의 장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은 지나치게 그린필드형 투자만 우대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대 7년간의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그린필드형 투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동안 지나치게 등한시

되고 국내투자보다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과세취급을 받아온 국제적(cross-border) M&A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조세제도상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다.

Ⅲ. 국제적 M&A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도입된 구조조정세제를 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법인 간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입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구조조정세제의 불합리성과 경직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국의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⁴⁾ 예를 들면, 미국의 A자동차회사와 우리 나라의 B자동차회사가 다같이 판매가 부진한 제품의 사업부문을 분리해 내어 그 부문에 대하여 기술과 인력 면에서 우월한 일본의 C회사에 합병시키기를 희망한다고 가정하자. 미국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자동차회사 자체나 그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조세부담을 주지 않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B자동차회사나 주주의 자산양도차익 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시점에 즉각 과세가 이루어져 양도기업에 상당한 세부담을 지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A자동차회사는 일본의 C회사와 신속하게 협상을 시작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시킴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존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4) 한만수,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 IFA 제16차 학술회의(심포지움), 조세학술논집제16집(2000), 국제조세협회, pp. 32~33.

편 우리나라의 B자동차회사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외부 차입이나 내부 증자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금조달의 결과 막대한 추가적 이자비용이 발생함으로써 B자동차회사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여 구조조정 자체를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사업부문 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전사업부문까지도 경쟁력을 상실하여 기업 전체가 도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구조조정세제의 불합리성과 경직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외국 자본을 가능한 한 많이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와 외자유치 측면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독일의 다국적기업 D가 정보통신기술이 잘 발달되고 시장이 비교적 큰 국가를 선택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그 대상국으로 기술 수준과 시장 크기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E국과 우리나라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E국은 외국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적격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자.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법」상 외국기업에 대해 이와 같은 과세이연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D사는 투자회수 시점에도 법인세 부담을 할 필요없는 E국을 투자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유치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조정세제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투자의 형태를 전환하는 행위나 기존의 기업을 청산하고 그 투자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
**현행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M&A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이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을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M&A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국제적 M&A 투자 관점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1. 우리나라 구조조정세제의 개요

가. 합병관련 구조조정세제

2009년에 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에 따르면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 결과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의 계속성 등 세 가지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즉,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 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⁵⁾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므로 과세이연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합병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상 의제배당⁶⁾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로 부여 받은 이익'⁷⁾을 가산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합병대가⁸⁾ 중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

여받은 이익과 금전 기타 재산으로 수취한 합병대가는 없다고(즉,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주식으로만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 당시의 의제배당은 0이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0으로 간주된 의제배당은 추후 동 합병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동 주식 처분시점에서 주식의 양도차익이 사실상의 의제배당액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합병매수 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한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합병매수차손)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규정된 세 가지의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자산별로 시가에서 피합

5)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6)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8)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하되,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가산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한편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별로 계상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이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을 사업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일정한 금액씩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 분할관련 구조조정세제

1) 인적분할의 경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손익을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시가로 평가된 분할대가(주식 포함)가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된다.
”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규정하는 과세이연 요건(즉, 사업의 계속성, 주주 소유관계의 계속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비적격분할’이라고 하고,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격분할’이라고 한다.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시가로 평가된 분할대가(주식 포함)가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된다. 그러나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대가로 새로이 수령한 주식의 가치가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과 동일하다고 간주함으로써 의제배당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인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을 가산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과 금전 기타 재산으로 수취한 분할대가는 없다고(즉, 분할대가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만 지급

“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 주주 소유관계의 계속성 등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했다고 가정하면 적격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당시의 의제배당은 0이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0으로 간주된 의제배당은 추후 동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동 주식 처분시점에 주식의 양도차익이 사실상의 의제배당액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즉, 분할매수차익)과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액(즉, 분할매수차손)은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한편, 적격분할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 자산조정계정을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 또는 가산하거나 자산의 처분 시 잔액 전부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미실현이득

을 인식하도록 한다. 한편, 분할 후 3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미실현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 등이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연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 주주 소유관계의 계속성 등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분할 후 3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미실현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이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과세가 되도록 하고 있다.

다. 현물출자 관련 구조조정세제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여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9)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익금에 산입하는 소위 ‘분할익금산입’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생기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로 생기는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대하여 과세이연 대신
분할익금산입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내국기업의 구조조정에 비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대하여 과세이연 대신 분할익금산입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내국기업의 구조조정에 비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라. 포괄적 주식교환 · 이전관련 구조조정세제

「조특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을 한 상대 기업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¹⁰⁾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 제외)

10) 「조특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그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만일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과세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피인수법인의 특정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는 교환·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의 주식 총합계액에 각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것
- 완전자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위와 같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주주가 내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에 부동산이 있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주식양도차익(①)에서 과세소득(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① 주식양도차익=(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금전등 수취액)-완전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② 과세소득=Min{주식양도차익, 금전등 수취액}

위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그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만일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과세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주주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외국법인(이하 “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① 교환·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 ②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거주자 등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 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위 양도소득-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처분한 주식수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수

한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는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마. 자산의 포괄적 양도관련 구조조정세제

「조특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하 “피인수법인”)이 적격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인수법인”)에 양도(이하 “자산의 포괄적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¹¹⁾ 이 경우 「법인세법」상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자산의 대부분’이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의 7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90% 이상을 말한다.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양도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

“
「조특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서 피인수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인수법인은 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¹²⁾

(「조특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수대가-포괄적으로 양도한 자산의 순자산 장부가액)×(인수대가 중 인수법인 주식등의 가액)/인수대가

「조특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¹³⁾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법인세법」상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1’과 ‘2’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피인수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11) 「조특법」 제37조 제1항

12) 조특령 제35조 제1항

13) 「조특법」 제37조 제1항 각호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2조에 따르면
 합병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여타의 구조조정세제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준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

2.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
 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 등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조특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서 피인수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인수법인은 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한다. 또한 인수법인은 「조특법」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¹⁴⁾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인수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적격합병 특례가 국제적 합병의 경우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은 적격합병 요건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⁵⁾ 내국법인이 외국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또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는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2조에 따르면 합병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여타의 구조조정세제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준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즉, 「법인세법」 제92조의 조문 내용만 놓고 보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피합병법인으로서 합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국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합병할 수 있는 합병법인의 지위에 설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법인세법」에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 가지의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허용될 수도 있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지위에서 의제배당소득도 과세이연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입장에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자산별로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제92조의 단서는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

14) 「조특법」 제37조 제3항

15) 「조특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병의 경우가 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합목적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합병법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일반 내국법인의 적격합병의 경우처럼 결손금을 승계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국내사업장이 합병법인으로서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결손금 승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승계는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요컨대, 「법인세법」 제92조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일반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적격합병 등을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합병법인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까지는 승계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새길 수 있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주주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¹⁶⁾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92조에 따르면 동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 당시의 시가가 아닌 피합병법인의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적격합병 특례의 적용을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적격합병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합병등 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는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피합병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적격합병 특례(즉,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이연)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된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한편 「소득세법」은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 의제배당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¹⁸⁾ 즉, 「소득세법」에 따르면¹⁹⁾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16)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17)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18)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19)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분할관련 세제는 일단 분할법인이
 내국법인일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의제배당의 한 종류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동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결국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피합병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합병 특례(즉,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이연)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적격분할 특례가 국제적 분할의 경우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²¹⁾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 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분할관련 세제는 일단 분할법인이 내국법인일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적격분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금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2조의 조문만 놓고 보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분할법인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국내 분할법인의 주주가 될 수도 있으며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지위에 설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으로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허용될 수도 있고 분할법인의 주주의 지위에서 의제배당소득도 과세이연될 수 있으며,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입장에서 소멸되는 분할법인 또는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제1항 제1호 나목

2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자산별로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병의 경우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인세법」 제92조의 단서는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 신설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92조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일반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적격분할 등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인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결손금까지는 승계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새길 수 있다.

분할법인의 주주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에 대한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92조에 따르면 동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분할법인의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 주식을 분할 당시의 시가가 아닌 분할법인의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적격합병특례의 적용을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르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분할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적격분할 특례(즉,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이연)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3조는 제2호에서 “내국법인 또는 법인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 의제배당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

“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분할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지위에 있는 경우
 적격분할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²²⁾도 의제배당의 한 종류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동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²³⁾에 따르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분할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지위에 있는 경우 적격분할 특례(즉,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이연)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92조에 따르면 물적분할시 과세특례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47조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 주주 소유관계의 계속성 등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4. 적격요건을 갖춘 현물출자 과세특례가
 국제적 현물출자의 경우에 적용 가능한
 지 여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2조에 따르면 적격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47조의2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인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

22)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제1항 제1호 나목

사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익금에 산입하는 소위 '분할익금산입'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생기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로 생기는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조특법」의 과세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

“
국내사업장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외국법인인,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에
관여한 내국법인인 완전자회사 또는
완전모회사의 주주인 경우에는
과세이연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보자. 「법인세법」 제47조의2의 규정을 따르면 적격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 모두가 내국법인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제약을 완화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일찍이 「조특법」에 반영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의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출자자인 입장에서 피출자법인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현물출자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적격요건을 갖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관련 과세특례가 국제적인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의 경우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외국법인인,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에 관여한 내국법인인 완전자회사 또는 완전모회사의 주주인 경우에는 과세이연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특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과세이연 요건 중의 하나가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2조도 「조특법」 제38조를 준용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

“
**「조특법」 제37조의 과세특례는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지는 않으므로 해당 「조특법」의 과세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한편 「조특법」 제38조 그리고 「상법」 제360조의 2나 제360조의 15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여하는 내국법인의 주주를 특별히 내국법인이나 거주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38조에 의해 완전모회사의 주주 또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를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완전자회사가 주주 중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 2에서 당해 주주가 국내에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관련된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가 내국법인이라면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6. 적격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련 과세특례가 국제적인 자산의 포괄
 적 양도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외국법인인 포괄적 자산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특법」 제37조에서 규정한 과세이연 요건 중의 하나가 ‘내국법인 간의 양도·양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2조도 「조특법」 제37조를 준용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조특법」의 과세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한편 「조특법」 제37조가 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여하는 내국법인의 주주를 특별히 내국법인이나 거주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37조의 과세특례는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국제적 M&A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구조조
 정 세제의 문제점**

1. 「상법」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령 세법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해 적격 구조조정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법」에 의해 구조조정 유형이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법」은 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국내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국내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617조), 위 조문의 반대해석상 국내에 본점이 없거나 국내에서 영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외국회사에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 관한 「상법」상의 조문들(「상법」 제3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분할로 인한 회사설립 절차도 「상법」상의 회사 설립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점(「상법」 제530조의4 제1항),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본점소재지에 분할의 등기를 함으로써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상법」 제530조의 11 제1항, 제234조) 등을 고려할 때 「상법」상의 분할제도는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도 「조특법」 제38조에서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당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자회사와 모회사 모두를 규율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법인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미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과세이연 기타 세부담 경감혜택을 허용하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적격 구조조정세제는 위와 같은 「상법」상의 규정을 충족하는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법」상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국내회사와 외국회사의 합병, 국내회사의 외국회사로의 분할, 국내회사와 외국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조정세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 중

고도기술산업 수반

외국인투자 또는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100% 감면 및

2년 50% 추가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

2. 외국인의 인바운드형 M&A 투자 관련 문제점

가. 투자 유형별 중립성의 상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제도를 살펴보면, 그린필드(Greenfield)형 외국인투자 중 고도기술산업 수반 외국인투자 또는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100% 감면 및 2년 50% 추가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투자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적격 구조조정세제의 혜택이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투자의 중립성이 크게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경제적 비효율성이 제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기초가 그린필드 유형에 주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축소해가는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그린필드형에 주어지는 외국인투자 감면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 제도의 중립성의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증대 필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
**내국기업 간에 허용되는 합병 등
 구조조정체제가 외국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런 점에서는 외국에 비해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다.**
 ”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²⁴⁾ 이와 같이 그린필드형에 주어지는 외국인투자 감면제도가 향후에도 상당기간 존치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 이 부분의 중립성 문제는 계속 고려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나.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제도상 차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중 그린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의 혜택을 주어서 시장에서는 외국기업이 내국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반면 내국기업 간에 허용되는 합병 등 구조조정체제가 외국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런 점에서는 외국에 비해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다. 물론 외국인투자자도 국내에 일단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일단 국내에 자회사를 확보한 후 이 자회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한다면 구조조정체제에 있어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자에게 구조조

정체제 관련 애로가 상당부분 존치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곤란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자회사나 계열회사들을 두고 있는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본사 차원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국내 자회사 간에도 합병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외국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 세법상 과세되는 경우가 많고 조세조약에서도 이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사례가 한-캐나다 조세조약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9다79736판결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환송판결한 2013나77265사건의 경우, 일본의 모회사가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주식들 중에 한국 자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었는데, 일본의 모회사는 동 주식의 승계는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부가액」에 따라 이전되어 이 사건 분할법인에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

24) 일례로 2015년 세법개정시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7년 감면시한을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한 2015년 7월 초 공청회에서 제시되었으나 KOTRA, 산업자원부 등의 반대로 인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분할은 외국법인의 분할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승계는 한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내국법인에는 허용하나 외국법인에는 허용하지 않는 구조조정세제의 과세특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3. 내국인의 아웃바운드형 M&A 투자 관련 문제점

가. 투자 유형별 중립성의 상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이 M&A 방식으로 해외진출할 때는 국내투자의 경우처럼 투자시점에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고 오직 「조특법」 제38조의3에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 익금하는 정도의 제한된 특례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국내의 해외투자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고 국내투자에 비해 차별적인 취급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만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허용되고 있다.
”

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의 부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세특례가 악용될 소지를 예방하는 장치는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요망된다. 예를 들면, 조세피난처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관한 합산과세)의 적용을 받는 소위 조세피난과세제도 적용대상 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여타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이 규정하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허술한 제도 운용은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현행 「상법」의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대부분 국내에 설립한 회사들 간의
구조조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내국법인과 외국회사 간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Ⅵ. 개선방안

1. 구조조정세제가 국제적 M&A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투자 및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각
종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
요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는 국내자회사나 외국자회사를 다른 외국기업에
합병시키거나 기타 다양한 M&A를 추진하는 경우
에도 국내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은 수준의 과세특
례를 허용하되 한편으로는 조세회피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여 합리적
인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선제
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한편
으로는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
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한
다면 다음과 같다.

가. 내국법인에만 한정된 적격 구조조정세제의 적용 범위 확대

이미 앞부분에서 검토했듯이 현물출자를 제외
하고는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자산
의 포괄적 양도시의 경우 목표법인과 양수법인이
원칙적으로 모두 내국법인에 한정하도록 하고 예
외적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
도록 한 기존 시스템을 대폭 변경하여, 미국 등 선
진국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각종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현행 「상법」의 구조조
정 관련 법제가 대부분 국내에 설립한 회사(즉, 내
국법인)들 간의 구조조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내국법인과 외국회
사 간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상법」을 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적격 구
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허용과 관련하여 과세목
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법」상의 규정을 전
제요건으로 하되, 외국회사와의 구조조정을 과세
목적상 허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의 규정이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합
리적인 방식으로 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 구조조정의 주요 유형별
로 위에서 언급한 「상법」상 해결과제와 세법상 해
결과제를 나누어 검토해 본다.

25) <http://www.pmsstax.com/acqbasic/Arg.shtml>

(가) 합병의 경우

① 상법개정 필요사항

국제적 합병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첫째는 국내에 피합병법인이 외국에서 신설되는 회사 또는 기존 외국회사와 합병하는 아웃바운드형 합병(outbound merger)이고, 둘째는 피합병법인이 외국회사이고 합병법인이 신설되는 회사이거나 기존에 신설된 내국법인인 인바운드형 합병(inbound merger)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웃바운드형 합병이건 인바운드형 합병이건 그것이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그 합법성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상법」상 과세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상법」상 내국법인과 외국회사간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간 합병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병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내에 설립 본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국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상법」상 합병이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이 전제되어야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도 구조조정세제가 준용되도록 한 「법인세법」 제92조가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상법」 제174조 제1항을 개정하여 현행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회사(외국에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는 합병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우리

“
아웃바운드형 합병이건
인바운드형 합병이건
그것이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그 합법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라 「상법」은 내국법인 간의 합병만을 적법한 합병으로 취급한다는 인식이 바뀌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세법개정 필요사항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예산심의와 함께 거의 매년 개정을 하는 세법과는 달리 「상법」 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법」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외국회사와의 합병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합병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미국의 입법 및 해석례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미국 국세청은, 합병에 관하여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각 주에서 두고 있는 실정법상의 합병(statutory merger)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2006년 시행규칙 개정을 근거로 하여 미국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회사와의 합병 또는 외국회사 간의 합병(foreign mergers)에 대해서도 외국의 실정법상 미국과 유사한 합병제도(즉, 피합병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법인에 양도되고 피합병법인은 소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세법 제368조의 A형 조직재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따른 과세특례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²⁵⁾

“
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관할권도 없는
외국법인의 설립절차를 「상법」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본다면 우리의 경우도 「상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세법운용은 탄력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즉, 현행 「상법」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인세법」상의 문구의 수정 또는 예규에 의한 현행 세법의 해석을 통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그리고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합병 등”)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상법」에 의한 합병 등의 경우에도 그 성격이 우리나라의 「상법」과 유사하다면 목표법인과 그 주주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입법론적으로도 가능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²⁶⁾

(나) 분할의 경우

현행 「상법」상 분할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분할로 인한 회사설립 절차도 「상법」상의 회사설립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상법」 제530조의4 제1항),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본점소재지에 분할의 등기를 함으로써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30조의 11 제1항, 제234조). 분할법인이

국내에서 회사설립을 하는 경우 또는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이 국내에서 회사설립을 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위와 같은 「상법」 조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규정을 이행한 합법적인 분할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세제의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국법인을 분할하여 그 중에 적어도 하나를 외국회사에 합병시키거나 외국에 별도의 회사로 신설하는 경우 이러한 회사에 대한 분할시 발생하는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행 「상법」상 외국법인의 설립절차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격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자본 수출의 중립성에도 위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경우, 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관할권도 없는 외국법인의 설립절차를 「상법」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분할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의 실정법상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되거나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아 분할시 발생하는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6) 그렇다고 해서 「상법」상의 합병요건(예: 주주총회 승인)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으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세법규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바운드형 합병의 경우 '외국의 피합병법인이 외국의 「상법」에 따라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 승인 등 적정한 합병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국내 「상법」상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아웃바운드형 합병의 경우 내국법인인 '피합병법인이 외국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 등 적정한 합병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국내 「상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 합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① 상법개정 필요사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도 「조특법」 제38조에서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당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자회사와 모회사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상법」 제360조의3 제1항). 현행 「상법」상의 규정은 국내법인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만을 상정하고 각 당사자회사의 의무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 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법」에도 이러한 점을 상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상법」 제360조의3에 제6항을 신설하여, “주식교환을 하려고 하는 일방이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소재지국 「상법」 또는 회사법에 따라 적법한 주식교환 절차를 취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② 세법개정 필요사항

위와 같은 「상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령개정안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 요건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행 「상법」 제360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고 한편으로 외국법인이

“
「상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개정안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 요건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회사의 소재지국 「상법」 또는 회사법에 따라 적법한 주식교환 절차를 취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특법」 제38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된 우리나라 구조조정세제를 보완함에 있어 미국의 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국제적(cross-border) M&A에 대한 적격 구조조정세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반대로 중국기업이 외국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주식교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계열그룹 내의 주식교환인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과세이연을 허용해주고 있다.²⁷⁾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미국과 같은 정도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과세이연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제1단계 조치로서 중국의 경우와 같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반대로 우리나라의 기

27) Danny Po/Jeremy Ngai/Howard Yu, China's New Corporate Restructuring Tax Rules, Asian Tax & Advisory Webcast Series, PriceWaterhouseCoopers, 18 May 2009.

“
우리나라도 국제적 M&A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목표법인인 주주가 내국법인 경우에는
동 법인의 목표법인 주식의 취득원가를
조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업이 외국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2. 자산(주식)소유권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한 과세권 상실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지금까지 논의한 구조조정세제 관련 과세특례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세법에서 규정한 적격구조조정의 경우에는 목표법인이나 목표법인의 주주의 과세를 이연하고 대신 양수법인이 취득한 자산 또는 주식의 basis를 당초 목표법인이 보유한 상태의 장부가로 조정한 후 양수법인이 해당 자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단계에서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단계에서 행해졌을 과세를 해당 자산 또는 주식의 처분단계까지 이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적 M&A의 경우 양수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양수법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를 이연해 주었던 목표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아닌 과세권 상실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국제적 구조조

정세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목표법인의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계산시 사용할 취득가액을 조정해 줌으로써 목표법인 주주가 해당 지분을 처분할 때 과세이연된 부분도 함께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도 미국의 구조조정세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M&A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목표법인인 주주가 내국법인 경우에는 동 법인의 목표법인 주식의 취득원가를 조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 국제적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 필요

미국의 구조조정세제 중 미국인 양도인이 목표법인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중에는 i) 국내 대상회사의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모든 미국인은 양수 외국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이나 주식가치 어느 것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ii) 미국 대상회사의 임원이나 이사 또는 5% 주주인 미국인들이 거래 이후 양수 외국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이나 주식가치 어느 것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iii) 양수 외국회사는 조직개편 이전 36개월 동안 적극적 외국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추가된다. 이와 같은 요건들은 미국의 구조조정세제가 미국의 과세권을 회피하기 위한 전도거래(inversion transaction)로 악용되는 것을 막거나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세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택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국인

이 해외의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된 해외의 특수관계회사 등을 통해 수동소득을 과다하게 유보함으로써 조세회피 또는 과세이연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피난과세제도가 「국조법」 제4장 (제17조~제20조의2)에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과세특례를 국제적 M&A에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조세피난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특정 외국법인 등이 과세특례를 받지 않도록 세제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구조조정세제가 국제적 M&A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세조약 정비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우리나라에 자회사나 계열회사들을 두고 있는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본사 차원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 국내 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발생하거나, 국내 자회사 간에도 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 세법상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OECD 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자산이 국내 부동산으로 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일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지국(원천지국)에서는 과세권이 없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권을 가진다. 그러나 UN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일정 부분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의 일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지국에서도 과세권을 가진다.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약 2분의 1 정도는 OECD모델 조세조

“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과세특례를
국제적 M&A에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조세피난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특정 외국법인 등이
과세특례를 받지 않도록 세제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약을 따르고 있으나 약 4분의 1 정도는 UN모델조세조약을 따르고 있다.²⁸⁾ OECD모델 조세조약을 따르고 있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본국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자회사 주식 등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을 것이므로, 설령 우리나라 세법상 구조조정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관련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권을 갖지 못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UN 모델조세조약을 따르고 있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법상 구조조정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소개한 대법원 2009다79736 판결은 일본의 모회사의 분할과정에서 한국 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지분율 25% 이상을 보유한 외국회사의 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과세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 사건의 경우 조세조약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령 해석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는 판결은 타당성이 있으며 따라서 그 과세권을 정당하게 행

28) 나머지 4분의 1은 OECD모델조세조약 또는 UN모델조세조약과 이에 다르거나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의 적격 구조조정을 존중하여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한 우리나라 과세당국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제도는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 발생지국에서 과세권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본국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회사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다국적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9항은 좋은 선례가 된다. 왜냐하면 동 조약은 제13조 제5항에 의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상대국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되나, 동조 제9항에 의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를 통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외 진출국에 소재한 외국기업의 주식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다가 모기업인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적격 구조조정으로 외국기업 주식의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예: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일부인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이 합병법인에 장부가격으로 양도되는 경우) 동 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

는 자국세법에 따라 해당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한국에 소재하는 피합병법인은 동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외국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적격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동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을 개정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추후 합병법인이 합병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즉, 외국 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이연된 소득이 과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세가 되는 시점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의 적격 구조조정을 존중하여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조약 중 과점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세조약(예: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미얀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 태국, 파키스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조세조약 개정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VII. 결어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저하의 현실은 향후 우리나라에 또 한 차례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과거 최고 11위까지 기록한 적이 있으나 2015년에는 26위로 추락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급속한 노령화, 청년실업의 증대, 과다한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반기업 정부의 확산 등으로 인해 향후 수년 동안의 경제성장을 예상치도 희망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의 발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사실 이와 같은 위기의식은 이미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2014년 말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M&A관련 세제 등 제도 개선을 도모해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 설정과 함께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과세특례 연장'등을 추진하였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00% 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조정세제는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까지 주로 내국법인들 간의 투자 또는 자본거래에만 허용되어 왔던 구조조정세제(즉, 적격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세제)에 대해 향후에는 그 외연을 넓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외국법인들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하는 내국기업들이 외국기업과 M&A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과세당국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적격 구조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예상되는 조세회피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지 장치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2002.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우리나라 M&A 및 Greenfield FDI의 동향·특징 및 시사점』, 2012.
- 김영태·강삼모,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2.8.
- 김진수 외 5인,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10.
- 김철중,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 김해마중, 「해외사업 기업구조조정과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미국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XII-2), 2006.
- 박영렬·김필수, 「한국기업의 국제인수합병 역사와 전략」, 『경영사학』 제30집 제1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5.3.31.
- Danny Po/Jeremy Ngai/Howard Yu, *China's New Corporate Restructuring Tax Rules*, *Asian Tax & Advisory Webcast Series*, PriceWaterhouseCoopers, 18 May 2009.
- Peter H. Blessing(Editor), *Blessing, Tax Panni*

ng for International Mergers, Acquisitions, Joint Ventures and Restructurings, Volume 2, United States, Wolters Kluwer, 2012.

Stephen Nelson, *M&A tax rules finally issued*, *International Tax Review*, July/August 2009.

2016 세법개정(안)

- 2016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정정훈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과장
- 2016 세법개정안 평가
이동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경제활력 제고 · 민생안정 · 공평과세 ·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2016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2016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과장

I. 20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과 내수 지표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어 민간의 활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등의 영향은 일자리 창출의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세제, 예산과 같은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므로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확충과 서민·중산층의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림 1] 2016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II. 2016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 경제활력 제고

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등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 8%, 대기업 7%)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또한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하여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7~10%)를 마련함과 동시에 음악·웹툰 등의 콘텐츠 기술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을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5%)를 신설하고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등을 신설하여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나.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하고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적용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다.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를 확대(행사가격 연간 1억원→3년간 5억원)하였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기업이 재화 수입 시에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였다. 면세점 특허기간의 경우에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및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기업구조조정 지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6~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토세 적용 포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협력제고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완화(80%→70% 이상)했고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중복자산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 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또한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써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였고,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된 구조조정에서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까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민생안정

가. 서민·중산층 지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여 고소득층 구간의 공제를 다소 줄였

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일시적 2주택에서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하여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율 공제를 확대(50%→100%)하여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연장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해소하고자 했다.

나.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및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를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였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다양해 질 수 있도록 현행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하였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할 경우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7%→10%)하였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중도해

지가산세(2%)를 폐지하였다.

다. 농어민 등 지원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확대하였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 이내)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 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하고 공제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였다.

3. 공평과세

가. 과세기반 확충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코스피200 주식 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특례세율을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하였다.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수단도 마련하였다.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10%)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

품 소매업을 추가하였다. 또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일몰종료를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합리화하였다.

나. 역외세원 확보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 국가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20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작성하여 2017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2018년부터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를 도입하여 국내 거주자(대주주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 증여시 과세방법을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역외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였다. 우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하여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투자·임금증가·배당 1:1:1에서

1:1.5:0.8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였다. 또한 배당 소득 증대세제 개선과 관련하여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를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하여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중에서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조세제도 합리화

가. 납세자 권익 보호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과 같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나. 납세 편의 제공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을 통해 기존 분기별로 실시하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반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체납정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 예술품 등은 전문 매각기

관을 통한 공매대행을 허용하여 공매절차를 개선함은 물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하였고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하였다. 그리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을 통해 해당 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을 감안하였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였고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2018년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합리화하여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조정하였다.

Ⅲ. 세법개정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법개정 세수효과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3,17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요증가 요인은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등이다. 주요 감소요인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이를 세부담 귀착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이 7,252억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80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향후 추진일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8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6 세법개정안 평가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는 지난 7월 28일에 공개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세법개정안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는 ‘경제 활성화’, ‘소득분배효과’, ‘제도 합리화’, ‘세수효과’를 기준으로 전개한다.

‘경제 활성화’는 조세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는 핵심적인 정책효과라 할 수 있다. ‘소득분배효과’는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것으로, 고소득 계층에서 좀 더 세금을 부담하고 그 재원을 저소득 계층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효과가 되겠다. 현대에는 공평과세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담세력에 따른 과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의 소득분

배효과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제도 합리화’는 세금 징수 대상이나 방법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납세편의 제고 여부를 살펴보는 기준이다. 징수 대상의 합리성은 개념상 일정 부분 조세 형평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분배효과’와도 관련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도의 합리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들은 ‘제도 합리화’에서 다루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세수효과’에서는 세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국가 재정의 재원확보 기능 측면에서 세제개편을 논의한다. 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 중 하나가 세원확대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주요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에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한 논의도 ‘세수효과’에서 함께 다루도록 한다.

I. 2016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¹⁾

2016년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맞추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과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네 가지 정책의 기본방향 아래, 내국세 11개, 관세 2개 등 총 13개 법률을 대상으로 215개에 달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상기 중장기 목표와 네 가지 기본방향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목표로 지난해와 201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필두로 고용 유도, 투자 활성화 및 수출 촉진, 그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안도 구상되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안 등이 제시되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선택되었으며, 역외세원을 확보를 위해 국제조세 제도도 정비되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위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한 정비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목적에 적합하도록 과세대상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들도 포함하였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그 모토인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에서도 볼 수 있듯,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으로 대변되는 청년취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올해 세법개정안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생활부담을 덜고자 함을 중점적인 목표로 했을 수 있다.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을 11대 신산업으로 선별하였다.²⁾ 그리고 각 산업의 혜택범주도 필요에 맞게 확대·조정하였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산업분야(신약 개발 의약품 분야 및 문화콘텐츠 분야 등)를 확대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R&D 개발기관(위탁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친환경 차량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수소차) 및 세액감면(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밖에, 신성장산업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신설하고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

1) 본 장에서는 기획재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하였다.

2) 11대 신산업에는 ① 미래형 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SW 및 보안, ④ 콘텐츠, ⑤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 에너지 신산업·환경, ⑨ 융복합 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가 포함된다(기획재정부(2016.7.28.) p. 3).

식으로 전환한 것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특구의 세제지원 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액을 인상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주거안정(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출산 및 육아비용 절감(둘째 이상 세액공제 확대,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 공제제도 확대 등),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근로장려(근로장려금 대상 및 규모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II.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6%에 머물렀으며,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평균 성장률도 3%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6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2% 후반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말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고, 중국 경기의 둔화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등 대외여건 또한 매우 불확실하게 흘러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법개정안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라는 방향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편안으로는 상술하였던 신성장산업의 R&D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철강산업이나 조선·해운산업 등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여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소차나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확대한 것은 신산업(에너지 신산업·환경 및 미래형 자동차)의 육성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오염 저감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등 초기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도 마련하였다. 기업의 벤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벤처기업의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 범위 확대,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의 개정안은 초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대부분 금년 말까지인 일몰을 2018년이나 2019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하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등의 제도 적용기한 연장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정책목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들도 있다.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들은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초기자금조달

을 돕고 벤처기업 투자자들의 투자자본회수를 지원하여 초기 중소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³⁾ 그러나 저금리의 추세 속에 벤처기업가들은 은행의 대출이나 정부의 정책지원자금을 통해 높지 않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⁴⁾ 이러한 여건에서 벤처투자자본이 있어도 그 자본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형편이다.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경영권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업으로 계속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벤처기업가들이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⁵⁾ 벤처투자자금의 공급을 늘리더라도 그 자금을 쓰려는 초기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고용증대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적용대상을 일일이 지정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업종을 반영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선택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의 형평성이나 그 기준의 일관성도 문제가 되기 쉬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고용증대세제는 추가 고용된 인원에 대해 고용 후 일정 기간 동안 1인당 정액으로 공제해 준다. 그러나 고용(특히, 정규직 채용)의 결과는 고용한 그 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을 준다. 세제가 일회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세제지원보다는 앞으로의 영업환경 및 자신들의 향후 비전에 따라 추가 고용 여부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특구 기업들의 세금감면을 고용인원기준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청년고용증대세제보다 고용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⁶⁾ 이 두 제도는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일회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계획에 없던 고용을 추가로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추가고용을 계획하였을 때 그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왕 고용하는 것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⁷⁾

3) 이번 개정안 중, 협회장외시장(K-OTC)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도 보도자료에는 '세제 합리화'를 도모한 제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초기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4) 여기에서의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뿐 아니라 시간비용까지 포함한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벤처투자보다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절차가 더 간단하여 더 짧은 시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동규(2015)를 참고할 것

6) 그러나 지역특구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가 큰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상 고용창출증대세제보다는 더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지역특구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고용효과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다.

7) 이와 관련해서는 안종석(2015)을 참고할 것

Ⅲ. 소득분배효과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서 바야흐로 북미나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하여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복지나 사회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조세의 형평성 제도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조세의 소득분배효과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 추산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은 3,805억원 세부담이 감소되며 고소득자 및 대기업은 7,252억원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은 각각 2,442억원, 1,363억원씩 감소되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각각 1,009억원, 6,243억원씩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5년 세법개정안과 비교하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 감소분은 더 늘고($\Delta 1,525 \rightarrow \Delta 3,805$),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분은 감소하였다($10,529 \rightarrow 7,252$).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징수증가분이 줄어들었으나, 계층별 징수증감의 방향성과 규모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세법개정을 통한 세금 증가효과는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나(10,892억원 $\rightarrow$ 3,171억원), 서민·중산층·중소기업과 고소득층·대기업의 소득에서의 겹 감소효과는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이다(2015년 12,054억원, 2016년 11,057억원).

다만, 정부의 세부담 귀착효과 추산과정에서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효

과를 모두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만약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기요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율 인상효과는 유연탄 공급업자들과 전기 공급자들 사이에서 모두 귀착되므로 정부의 가정도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향후 전기요금이 상향 조정된다면 세부담 효과는 일정 부분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기요금의 변화여부에 따라 정부가 추산한 소득분배효과는 과대추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눈에 띈다. 먼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을 10% 증액하고 지급대상의 주택보유 기준을 완화하며 부녀자 소득공제분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저소득 지원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직접지원뿐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그 한도를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낮추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차등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추가로 얻게 될 혜택은 없으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임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작게나마 역할을 할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도 소득분배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중산층 이하의 월세 세입자들은 기존보다 최대 15만원까지 세금이 경감된다.

농어민이나 임업종사자,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들도 포함되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대상이 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와 농어민 범위를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중 주택연면적 제한을 폐지하였다. 임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임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입목 취득을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들로는 장애인 신탁을 통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업의 장애인 운동부 운영비 관련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혜택도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해당 지원을 유지하였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은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계층별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먼저, 민생안정과 관련된 기존 제도의 일몰이 대부분 연장되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의 연장이나 각종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를 적용기한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록 이러한 정책들의 일몰 연장이 제도의 합리성이라는 기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예정

대로면 없어질 혜택을 연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지원효과는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출산 및 육아, 교육비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만의 혜택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책지원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최소한 분배의 형평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안정을 위한 출산이나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들은 제도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분배효과와는 별개로 이들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다. 2014년에 이미 근로자의 48% 이상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은 이미 기존의 세액공제제도 아래에서도 대부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강화한다고 그 제도의 목적대로 저소득층이 출산을 늘리거나 월세나 교육비를 보상받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이다. 따라서 이들 세액공제제도들은 제도의 취지와 제도가 가지는 인센티브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들이 처한 납세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재진(2016)을 참고할 것

IV. 제도 합리화

제도의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과세대상이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우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개편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개인은 자산으로, 법인은 순자산(주식가액)으로 함으로써 양자 간의 적용 개념이 일관적이지 못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의 경우에도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함으로써 개인과 법인 모두에 순자산 개념이 적용되게 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6원씩 높인 것은 연료 간의 발열 효율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즉, 발전용 LNG와 유연탄의 발열 효율이 2:1임에도 두 연료의 기존 개별소비세율은 60원:24원으로 2:1을 넘었다. 이에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30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열 효율과 세율의 균형을 맞추었다. 발열 효율만 놓고 본다면 이번 개정안이 합리적이지만, 에너지세의 취지인 외부비용의 내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세율 상승분은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유연탄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청정연료로 불리는 LNG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이번 세율조정이 분명 합리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교정세로서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발열 효율을 넘어서 사회적 비용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추가적인 세율 조

정이 필요하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개정한 것도 합리적 조정으로 평가된다. 원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는 투기 내지 투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중과세하였다. 2016년부터 해당 중과세 제도를 개인 및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대신 장기보유자인 경우에는 그 투기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중과세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토지 양도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정세법에는 언제부터 보유하였는지 모든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제도가 시행한 2016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3년 이상 장기보유기준을 만족하려면 2018년 말 이후까지 보유하도록 만들었다. 토지 양도를 유도하려던 원래의 정책목적과 반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유기간 기산일을 원래 토지 취득일로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였다.

한편,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연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소득원별 공평과세 측면에서 비과세 적용을 일몰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근로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규모의 소득이라면 같

9) 강만옥 외(2015)의 p. 30 <표 3-3>에 따르면 두 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PM ₁₀	SOx	NOx	VOC	NH ₃
유연탄 g/kg	29	9.5	5.55	0.03	0.00028
LNG g/m ³	0.036	0.01	3.70	0.21	0.051

강만옥 외(2015)에서는 두 연료의 단위당 환경비용을 각각 5,651원/kg, 180원/m³으로 추산하고 있다(p. 31. <표 3-6>).

은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월세 가격 인상을 통한 임차인으로서의 조세전가가 우려되기도 한다.¹⁰⁾ 또한, 임차인으로서의 조세전가 가능성이 크다면 제Ⅲ장에서 언급하였던 월세 세액공제제도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임대소득세에 대한 전가효과가 월세 세액공제효과보다 클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공평과세보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에 우선을 둔 결정이라 판단된다.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들도 제안되었다. 중고차 거래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3개 업종을 추가한 것들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다.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는 세원확대 및 공평과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이다. 그간 공익법인이 기업 총수들의 상속세 절감을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던 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납세 편의를 높이는 제도들도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를 전문매각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게 허용하였고, 관세감면 대상 설비의 반입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절차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주식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

로 축소할 것도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납세자의 권익을 키우는 제도들도 마련되었다. 납세자가 제출한 평가액도 합리적이라면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고,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관세신고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V. 세수 효과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에 대한 지출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수입은 재정지출의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처음 계획하였던 예산으로도 모자라 2015년에 11.6조원의 추경예산을 집행한 데 이어, 2016년에도 정부는 11조원가량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실정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38%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과 대비해도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다.¹¹⁾ 그러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국가채무의 상한선을 GDP 대비 45%로 두는 재정건전화법을

10) 이와 관련한 연구는 성명재(2011)를 참고할 것

11) 2014년 OECD 회원국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는 88.9%이다.(OECD, Stat, Government at a Glance 2015)

제정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요약한다면, 첫째로 국가의 재정지출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고, 둘째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향후에는 국채활용을 지금만큼 많이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원을 확대하여 세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표 1〉 국가재정 관련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조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세수입	192.4	203.0	201.9	205.5	217.9
총지출	304.4	323.3	337.7	347.9	372.0
국가채무	420.5	443.1	489.8	533.2	590.5
국가채무/GDP	31.6	32.2	34.3	35.9	37.9

출처: 기획재정부 재정통계(www.openfiscaldat.go.kr)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016년 세법개정안으로 연간 3,171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2015년 세법개정안이 연간 1조 892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예상되었음에도 국가 재정지출을 감안할 때 세수증가효과가 작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2016년에는 그보다 더 작은 세수증대만이 기대되는 것이다. 특히,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안이 연간 약 4천억원 이상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발전용 유연탄 과세 강화 조치를 제외하면 이번 개정안은 거의 세수중립적인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¹²⁾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이번 개편의 문제도 바로 세원확보

및 세수증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점만 봐도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수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세입확충의 문제보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의 모토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증대’를 가장 앞선 목표로 내세운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치적으로도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압력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별도의 세율 인상 없이 비과세·감면 정책을 계속 확대하여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하였다.

세수효과를 비약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없다는 평가와 상통한다. 세입확충에 비중을 두었다면 당장 세율의 인상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축소시켜야 했다. 그러나 일몰이 도래한 25개 제도들 중에서도 예정대로 일몰시킨 제도는 단 4개에 불과하다. 이 4개도 실질적으로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진 제도들뿐이다. 비과세·감면 위주의 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을 늘려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합리적이고도 단순명료한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저해가 되는 등의 단점도 함께 있다.

물론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 보여주듯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항상 국가의 세수감소로 이

¹²⁾ 발전용 유연탄의 소비는 최근 5년 평균 79,220천톤 수준이다. 따라서 평균 소비량에 6원/kg의 세율 인상분을 적용하면 약 4,753억원의 세수 증가를 단순 예상할 수 있다.

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율이 낮아져도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의 총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 다만, 세법개정안이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한 청사진 속에 구상된 것이라면, 세원 확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만옥 외,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현장실천 통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4.11.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개정안-보도자료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7.28.
김재진,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Vol.241, 2016.7.
성명재, 「주택 및 전월세 가격결정과 임대소득세 과세의 영향 및 형평 효과」,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제28권 제2호 pp. 67-99, 2011.6.
안종석, 「2015 세법개정(안)」,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Vol.230, 2015.8.
안종석 외, 『증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제1편 총괄편: 조세부담률, 세수입 구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이동규, 「우리나라 M&A 시장의 현주소」,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Vol.228, 2015.6.

〈웹주소〉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GOV_2015), 접속일: 2016.8.15.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 접속일: 2016.8.15.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6-07

요약

- 미국은 2016년 6월 29일, 국가별 보고서 관련 최종규정을 발표함
 - 직전회계연도 연결매출액이 850백만달러 이상인 미국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가 작성하며, 작성내용은 계열사(constituent entity) 정보, 재무 및 종업원 정보, 추가 정보(데이터 출처, 내용변경)로 구분함
 - 2015년 12월 발표한 제안규정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최종규정으로 발표한 것이며, 최종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유효함
- 캐나다 국세청은 2016년 6월 30일,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세격차를 추정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조세격차 추정방법, 추정결과, 부가가치세 조세격차의 국제비교 내용을 담고 있음
 - 추정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조세격차는 5.6%이나 연도별로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동은 매입세액공제 지연신청 및 HST제도 도입으로 세수액에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함
- 아일랜드 세무당국은 6월 23일에 쌍방정상 가격승인제도(a bilateral Advance Pricing

Agreement, 쌍방 APA)의 적용절차, 적용 대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쌍방 APA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APA부터 유효함

- 아일랜드는 10월 예산안의 수립 이전에 정책의 우선사항과 선택사항들에 관한 공개토론을 위하여 하계경제성명서를 발표함
 - 하계성명서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소득세를 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세정책을 마련함
- 아일랜드는 BEPS Action 5에 따른 예규의 강제적 자동정보교환과 EU의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7월에 발표함
 -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국세청이 시행할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매뉴얼을 설명하기 위함임
 - 가이드라인에는 시행시기, 정보의 범위, 기타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최근 스페인 대법원은 OECD BEPS의 Action 7에 따라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의 정의를 넓게 해석함
 - 국외기업이 국내에 인적·물적 자원이 없이 국내기업에 위탁판매만 요청한 경우에도 해당 국내기업은 국외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독일 의회는 투자의 구조방식에 따라 펀드 세제를 개정하고 투자펀드의 실체에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에 대해 7월 8일에 합의함
 - 투자의 구조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투자펀드(Investment Funds), 특수펀드(Specialised Investment Funds),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세제를 개정함
- 독일 내각은 BEPS Action 13의 이전가격문서화와 그 외 FATCA에 관련된 협약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7월 13일에 승인함
 - 개정안은 그룹 총매출액이 연간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County by Country reporting)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간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교환체계를 도입함
 - 또한, 개정안은 이전연도의 그룹 총매출액이 1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국내 납세자는 특정 상황에서 마스터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함
- 스위스 국회의 하원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을 해결하기 위한 OECD의 Action plan과 EU의 요구를 반영한 법인세 개정을 6월 17일에 승인함
 - 주요 개정내용은 주정부단계의 소득세 부과를 폐지하고 OECD가 권고하는 특허박스제도, R&D 추가 소득공제(super tax deduction)임
- 러시아는 전자적 용역을 사용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외법인이 국내에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도 15.25%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개정 법안(Federal Law 244-FZ)을 7월 3일에 발표함
 - 개정 법안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자, 과세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벨기에는 BEPS Action 13의 이전가격문서화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소득세법 1992의 321/7)을 7월 4일에 발표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 이전가격문서화와 관련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기업·고정사업장에 대한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일정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함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16년 6월 8일, 이주근로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발표함
 - 적격 이주근로자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일자가 속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30%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16년 6월 27일, 납세협력프로그램(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me)에 참여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규신청간소화규정을 발표함
 - 예규신청 간소화규정에 따라 과세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예규신청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45일 내에 구속력 있는 예규(binding ruling)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뉴질랜드 국세장관은 2016년 6월 27일 BEPS 관련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담은 문서를 공개함
 - 문서에서 뉴질랜드 국제조세규정은 이미 국제적 요구사항에 부합하지만 일부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주요 개선분야를 보다 강건한 세법, 국제적 협력 참여, 투명성과 정보교환 증진으로 구분하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뉴질랜드 재무부 등은 2016년 6월 27일 국내로 유입되는 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루는 정책보고서를 공개함
 - 이 보고서는 현행 과세체계 및 미래 변화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완전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지만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
 - 주요 결론은 국내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 세원보호조치의 필요, 원천징수세 부과 효과성 확인 등임
- 뉴질랜드 국세장관은 2016년 7월 7일, 투자소득 과세절차 개정을 위한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이러한 논의는 고령화에 따른 투자소득이 증가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세절차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

히며, 원천징수정보 보고 강화, 불필요한 절차 완화 및 기타 관련 제반 절차 등을 다루고 있음

- 이 제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입법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과세관청은 2016년 6월 29일, 이전가격문서화 및 거래 보고에 대한 공지 42를 공개함
 - 공지는 관계기업 및 관련거래의 식별과 보고, 동시적 문서화 및 관련 행정절차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이 공지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관련된 이전의 공지 2009년 2호의 일부와 2008년 114호를 폐지함
- 일본 과세관청은 2016년 6월 30일, 이전가격문서화 개정에 따른 지침을 공개함
 - 이는 BEPS Action 13에 따라 이전가격문서화가 개정되어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임
 - 세부지침은 로컬파일 작성에 따른 예시, 최종모회사의 신고사항 및 대표 신고자에 관한 사항, 국가별 보고서 보고사항, 사업개황(마스터파일) 보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신고양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싱가포르 과세관청은 2016년 7월 11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요건과 이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공개함
 - 지침은 세법에 따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요건으로 기존 판례에 따라 구조와



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순환흐름·라운드트립핑, 세제혜택만을 위한 실체의 설립, 경제적 실질이 없는 소득 배분 등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EU위원회(EU Commission)는 2016년 6월 21일,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에 대한 EU회원국 간의 합의를 발표함

- 동 지침은 지난 1월 제안된 조세회피방지 패키지의 연장선상에서 이자비용공제제한, 출국세,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GAAR), CFC규정, 혼성불일치해소 등 EU회원국이 도입해야 하는 5개의 최소기준을 제시함

- EU의회는 2016년 7월 6일, 특별위원회(TAXE2)의 EU의 법인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고서를 채택함

- 동 보고서는 공격적 조세회피전략 및 조세 피난처 등 비협조적 조세관할지역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 OECD는 2016년 7월 4일 BEPS프로젝트 Action 8-10에서 다루는 이익분할법(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의 수정지침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문서를 발표함

- 동 협의문서는 이익분할법 적용과 관련된 총 18개의 질의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의견 제시 기한은 2016년 9월 5일임

- OECD는 2016년 7월 4일, BEPS프로젝트 Action 7의 후속 작업으로 고정사업장 소득 귀속의 추가지침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문서를 발표함

-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총 21개의 질의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의견제시 기한은 2016년 9월 5일임

- 2016년 6월 30일 일본에서 개최된 BEPS프로젝트 포용적 체계 첫 회의에서 한국 등 5개국이 추가로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MCAA)에 서명함

- MCAA에 추가 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조지아, 우루과이, 쿼소 등 5개국이며, 이로써 MCAA를 체결한 국가는 현재 총 44국에 달함

- 한편 처음으로 개최된 BEPS프로젝트 포용적 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의에는 8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석하여 BEPS프로젝트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이행 등 BEPS 관련 현안을 논의함

- OECD는 2016년 6월 29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국가별 보고서 이행과 관련된 추가 지침을 발표함

- 본 지침은 (i) 국가별 보고서 도입 과도기 기간의 자발적 신고, (ii) 투자펀드의 신고, (iii) 파트너십의 신고, (iv) 국가별 보고서 신고대상 기준 매출액 7억 5천만유로에 대한 환율 변동 관련 고려사항을 포함함



- OECD는 2016년 7월 11일, BEPS프로젝트 Action 4 이자비용 공제제한의 그룹비율 산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문서를 발표함
 - 이자비용 공제제한의 그룹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총 14개의 질의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의견 제시 기한은 2016년 8월 16일임
- OECD는 2016년 7월 11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 대응과 관련하여 조세예규 교환을 위한 표준 IT포맷을 발표함
 - Action 5에 따른 조세예규교환은 BEPS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기존 예규교환에 대한 과세당국 간 교환은 2016년 말까지 이루어져야 함
- OECD, UN, IMF, 세계은행 등으로 구성된 조세협력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은 2016년 7월 25일 G20 재무장관회의에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개발 국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함
 - 동 보고서는 각 국제기구들의 조세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험에 비추어 역량개발사업의 성공요소와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1. 미국-국가별 보고서(CbC) 최종규정 발표

- 미국은 2016년 6월 29일,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최종규정을 발표함¹⁾
 - 2015년 12월 21일 발표한 제안규정(proposed regulation) 중 고정사업장 정의와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실체 범위를 수정하여 최종규정으로 발표한 것임
 - 최종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유효함
- 미국 다국적기업(U.S. MNE group)의 직전 회계연도 연결 매출액이 850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최종모회사는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미국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는 최소 1개 이상의 해외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해외기업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미국기업을 말함
 - 미국기업은 법인, 고정사업장을 포함하며 자녀 상속재단(descendant's estate), 파산재단(bankruptcy estate), 위임신탁(grantor trust)은 제외됨
 - 고정사업장은 1) 조세조약에 의한 고정사업장, 2) 내국세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하는 사업장, 3) 기업 소유주와 별도로 세법상 납세자로 취급되는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수정함
- 국가별 보고서 작성내용은 BEPS Action Plan 13의 권고사항과 동일함
 - 작성내용은 계열사(constituent entity) 정보, 재무 및 종업원 정보, 추가정보로 구분함

1) 미 재무부 및 국세청, "TD 9773", EY, "Final US country-by-country reporting regulations analyzed in-depth," 2016.06.29.



〈표 1〉 미국 국가별보고 양식에 포함되는 내용

계열사정보	재무 및 종업원정보	추가정보
- 회사 법적이름 - 조세관할권 정보 - 계열사 거주지 - 주요 사업활동 - 납세자번호	- 총수익(계열사 간 거래로 발생한 수익과 아닌 수익 구분) - 법인세 차감 전 손익 -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총납세액 - 미지급법인세비용(accrued tax expense) - 법정자본금(stated capital) - 누적이익(accumulated earnings) - 유형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의 순 장부가액(net value) - 해당 과세관할권에서 일하는 정규직 인원 수	- 데이터 출처에 대한 설명 - 내용변경에 대한 설명

- 국가별 보고서는 2016년 6월 30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작성하며, 소득세 신고기한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번째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함
- OECD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OECD 권고사항과 차이가 있음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향후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2. 캐나다-부가가치세 조세격차(tax gap) 추정 보고서 발표

- 2016년 6월 30일 캐나다 국세청은 2000년~2014년까지 부가가치세(GST/HST) 조세격차(tax gap)를 추정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함²⁾
- 향후 2~3년 내에 다른 세목의 조세격차를 추정

한 연구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임

- 이 보고서에는 조세격차 추정방법, 추정결과, 조세격차 추정결과와 국제비교 내용을 담고 있음
- 조세격차는 Top-down방식³⁾으로 추정하였으며, 추정식은 다음과 같음

GST/HST 조세격차

$$= 1 - \frac{\text{실제조세충정액(Actual Assessed Tax)}}{\text{총조세부담액(Total Theoretical Tax Liability)}}$$

- 총조세부담액=(과세표준(각종 소비액)×지하경제인수(factor))×가중평균 유효 부가가치세율
- 실제납부액=연방정부 GST/HST 세수입+주 판매세수입+소비되었으나 비과세된 특정 GST/HST or 주판매세*

* GST/HST 등록·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추정 면제세액, 원주민(indian) 소비에 대한 GST/HST 면제세액, 주 판매세 면제액(예, US-캐나다 간 항공이용 시 주판매세 면제액)

2) 캐나다 국세청, "Estimating and Analyzing the Tax Gap-Related to the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2016.06.30. (<http://www.cra-arc.gc.ca/gncy/stmting-nlyzng-tx-gp/stmting-nlyzng-tx-gp-eng.html>)

3) VAT gap을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실제로 징수된 부가가치세액과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비교를 통해 VAT gap을 추정하는 방법임 (출처: 『세원투명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03.) 캐나다의 과세표준 데이터는 Statistics Canada's National and Provincial Economic Accounts data의 자료를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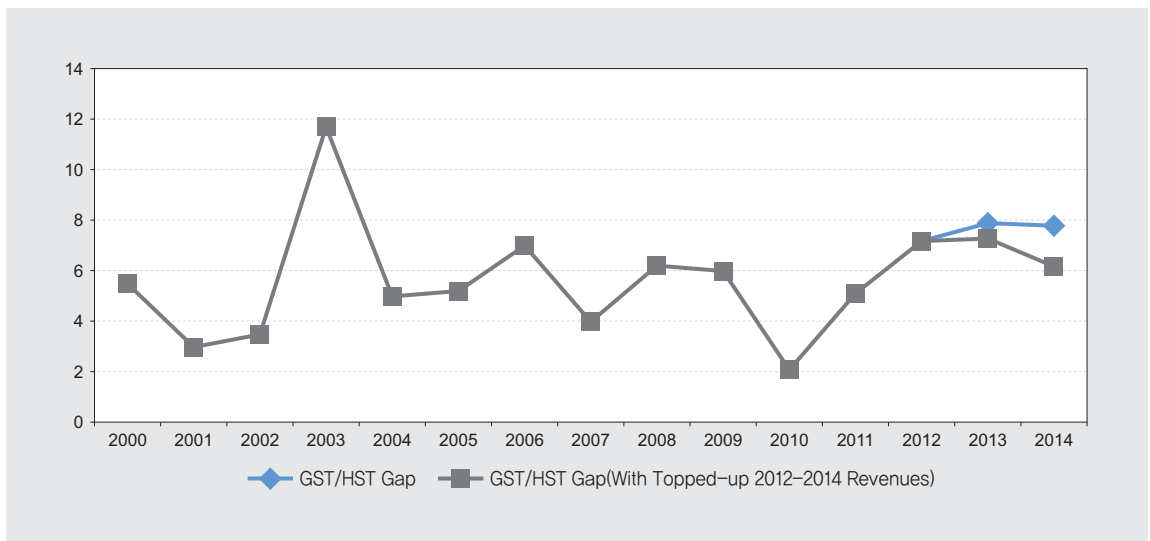
- 추정결과 2000년부터 2014년 동안 조세격차는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입세액공제 지연신청이 조세격차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2001, 2002년 조세격차는 2000년에 비해 낮고 2003년에 급격히 증가함
 - 이는 기업이 2001년, 2002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2003년에 신청해 GST/HST세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⁴⁾
 - 2010년의 조세격차가 다른 연도에 비해 낮은 것은 2010년 7월부터 온타리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가 HST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율이 기존 5%에서 13%로 인상됨에 따라 세수액도 급격히 증가한 것에 기인함

- HST 도입 이전 발생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HST도입 이후 신청되는 경우 세수액은 13%의 세율로 계산되는 반면 매입세액공제는 5%의 세율로 계산됨에 따라 GST/HST세수액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함⁵⁾

[그림 1] GST/HST 조세격차 추정결과(2000-2014년)

(단위: %)



출처: "Estimating and Analyzing the Tax Gap-Related to the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2016.06.30., p. 7.

4) 예로, 캐나다는 법인세를 인하를 발표하였고, 몇몇 기업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연도에 비용을 증가시키고자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지연시킴. 이후 법인세율이 낮아진 연도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수익을 이연시켰으며, GST/HST세수에 매입세액공제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GST/HST 총세수액의 왜곡이 발생함

5) 2010년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HST를 도입함에 따라 HST 도입 후 부가가치세율이 기존 5%에서 13%로 증가하였으며, 매입세액공제는 거래발생일로부터 4년 동안 신청가능함



■ 주요국과 비교 결과 캐나다의 GST/HST 조세격차는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호주의 조세격차는 4.9%(2014년), 영국은 10%(2009-10년), EU국 중 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은 4%, 스페인은 16.5%, 루마니아는 41%(2013년)인 것으로 나타남⁶⁾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APA협상을 개시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APA를 협의함

- 앞선 단계의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 공식적으로 합의함

- 그 외 과세당국이 거절하거나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포함함

3. 아일랜드-쌍방 정상가격승인제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 아일랜드 세무당국은 6월 23일에 쌍방정상가격승인제도(a bilateral Advance Pricing Agreement, 쌍방 APA)의 적용절차, 적용대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⁷⁾

- 쌍방정상가격승인제도의 적용절차는 사전요청단계, 적용단계, APA적용의 평가단계, 공식합의단계로 총 4가지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짐
 - APA의 사전요청단계에서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잠재적 APA 적용을 논하기 위한 과세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이중과세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통보함
 - APA의 공식 적용단계에서 기업은 APA의 요약, 기업의 개요, 사업분석, 재무정보, 법적계약 등과 같은 필수적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APA의 평가단계는 타 관할권의 과세당국과

■ 쌍방 APA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APA부터 유효함

- 일방적 APA나 2016년 7월 1이전에 승인된 APA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APA에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4. 아일랜드-하계경제성명서(Summer Economic Statement)⁸⁾

- 아일랜드는 10월 예산안의 수립 이전에 정책의 우선사항과 선택사항들에 관한 공개토론을 위하여 하계경제성명서를 발표함
- 하계경제성명서는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경기가 개선되고 있어 2019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에는 변동이 심한 외부경기

6) 단, EU의 경우 VAT측정액(VAT assessment)이 아닌 실제 징수된 세수액(VAT collections)으로 계산하여 캐나다의 조세격차와 단순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7) EY(<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TjOIFxoHOAhWBGZQKHU2PC7wQFggcMAA&url=http%3A%2F%2Fwww.ey.com%2FPublication%2FwLUAssets%2FEY-tax-alert-irish-apa-guidelines%2F%24FILE%2FEY-tax-alert-irish-apa-guidelines.pdf&usq=AFQjCNH0wAOIB4-vU8e5DIQFMakzBCK55Q&bvm=bv.127521224,d.dGo&cad=rjt>)

8) 2016 summer economic statement, 아일랜드 국세청

요인에 대비한 레이니데이펀드(rainy day fund, 경기불황에 대비한 펀드)를 마련할 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함

- 또한 상대적으로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 고용시장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재원마련을 위한 세법 개정에 대한 계획을 다루고 있음
- 하계성명서에는 기업과 근로를 장려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세정책방안이 포함됨
 -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을 인하하고 보편적 사회세(Universal Social Charge)⁹⁾는 소득에 따라 단계적 인하(phasing out)할 예정임¹⁰⁾
 - 2018년까지 PAYE(Pay As You Earn) 공제에 맞추어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함
 - 2017년부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10%의 세율구간을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 자본이득세율은 처분연도에 따라 20~33%의 세율을 적용하며 2012년 12월 6일 이후 처분자

산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5. 아일랜드-강제적 자동 정보교환에 관한 지침

- 아일랜드 정부는 EU의 강제적 자동 정보교환과 BEPS Action 5에 따른 예규의 강제적 자동 정보교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7월에 발표¹¹⁾함
 -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국세청이 시행할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매뉴얼¹²⁾을 설명하기 위함임
 - Council Directive(EU) 2015/2376은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지침2011/16/EU에 예규의 교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2015년 12월 8일에 발표되었음
 - 지침 2011/16/EU은 이중과세협약, 세무정보교환협정,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과 같은 다양한 조세행정공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아일랜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음

9) 아일랜드의 2016년 현재 보편적 사회세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2016년 소득구간	세율
총 소득의 처음 12,012유로까지	1
다음 6,656유로까지	3
다음 51,376유로까지	5.5
그 이상	8

출처: <http://www.revenue.ie/en/tax/usc/>

10) 아일랜드 재무성(<http://www.finance.gov.ie/news-centre/speeches/current-minister/minister-noonan-opening-speech-d%C3%A1il-summer-economic-statement>)

11) "Revenue Arrangements for Implementing EU and OECD Exchange of Information Requirements In Respect of Tax Rulings."

12) Tax & Duty manual Part 37-00-35



-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는 시행 시기, 정보의 범위, 기타 행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됨
- EU의 지침과 BEPS Action 5의 강제적 자동 정보교환은 개별적으로 시행됨
 - EU의 지침은 EU회원국에 의해 발행된 국가간 예규를 자동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아일랜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완료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BEPS의 Action 5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은 2016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EU의 지침과 BEPS Action 5는 특정거래에서 특정 납세자의 직접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발행한 사전예규와 세법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의 의견을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으로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 대법원은 국외기업이 국내에 인적·물적 자원이 없이 국내기업에 위탁판매만 요청한 경우에도 해당 국내기업은 국외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웹 사이트나 전화 주문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아일랜드기업이 스페인기업과 재화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은 스페인기업이 아일랜드 기업의 실질적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스페인기업을 아일랜드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판결함
 -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스페인기업이 아일랜드의 직원이나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아일랜드기업이 소유권을 보유한 재화를 자국내 고객에게 판매하였고, 아일랜드 기업은 재화판매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스페인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보아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6. 스페인-고정사업장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¹³⁾

- 최근 스페인 대법원은 OECD BEPS의 Action 7에 따라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 PE)의 정의를 넓게 해석함
- Action 7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신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판매업자의 과세권 배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논함
- 대법원은 앞선 6월 20일에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7. 독일-펀드세제의 개정

- 독일 의회는 투자에 구조방식과 투자펀드의 실체에 따라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7월 8일에 합의함
- 펀드세제의 개정은 당초 2015년 12월에 공개한 개정초안에서 중요한 수정없이 일부사항만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함
- 투자의 구조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투자펀드(Investment Funds), 특수펀드(Specialised Investme

13) EY(<http://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spanish-supreme-court-confirms-broad-interpretation.aspx>)



nt Funds),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세제를 개정함

- 투자펀드는 특수펀드나 파트너십을 제외한 모든 투자구조이며, 특수펀드는 투자자의 수를 한정하여 구성되는 펀드임
- 최종 승인된 법안은 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일부조항을 추가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독일외국인세법(German Foreign Tax Act)과 독일투자세법의 경합시 독일투자세법이 우선한다는 조항과 자본이득 ·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면제예외의 조항이 추가됨
- 뮤추얼펀드/리테일펀드의 주요 개정사항은 실체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 펀드단계과세의 개정이 이루어지며, 투자자단계에서 연간 정액세를 도입함
 - 펀드단계과세: 도관체로 보아 과세하지 않던 기존 규정과 달리 개정세법에서는 과세주체로 보아 과세함
 - 투자자단계과세: 일반적으로 과세는 2018년부터 펀드의 수익이 분배되거나 펀드가 상환되는 때에만 이루어지나 연간 정액세(Lump-sum tax)는 그와 관련 없이 부과됨
- 특수펀드는 세무상 도관체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파트너십은 투자세법 대신 일반 독일세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파트너십 세무처리를 제출함
 - 특수펀드는 일반적으로 도관체로 선택하지 않는 한 뮤추얼펀드와 동일하게 세무처리하며 도관체를 선택 시 펀드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투자자단계에서 과세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8. 독일-이전가격문서화에 관한 법안의 내각 승인

- 독일 내각은 BEPS Action 13의 이전가격문서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7월 13일에 승인함
 - 개정안은 새로운 EU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가간 사전예규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하는 내용과 국가별 보고서의 시행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국가별 보고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되,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신고된 국가별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이차적 장치(Secondary mechanism)는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 개정안은 그룹 총매출액이 연간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County by Country reporting)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간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교환체계를 도입함
 - BEPS Action 13에 따라, 초안의 국가별 보고서 규정은 세 가지 분류의 정보로 구성됨
 - 각 관할국의 소득, 납부세액과 영업활동에 관한 개관
 - 각 관할국의 다국적 기업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의 리스트
 - 앞서 명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 또한, 대리 모법인(surrogate parent entity), 현지법인(local entity)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함
 - 다국적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과세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는 15년 동안 보



관하여야 함

- 또한, 개정안은 이전연도의 그룹 총매출액이 1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국내 납세자는 특정 상황에서 마스터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함
 - BEPS Action 13에서 권고하는 로컬파일의 제출 의무는 이미 독일 세법에 입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세부규정에 대한 개정이 제안됨
 -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시 다국적기업의 국내 납세자에게 마스터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로컬파일도 동일함
 - 해당 기업은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이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스터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영업거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9. 스위스-법인세 개정

- 스위스 국회의 하원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관한 문제(BEPS)를 해결하기 위한 OECD의 Action plan과 EU의 요구를 반영한 법인세 개정안을 6월 17일에 승인함
 - 법인세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법안이 확정될 것임

- EU는 스위스의 법인세체계가 자국내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이나 자국내 기업이 보유하는 국외기업에 세제상 이득을 더 부여함에 따라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을 스위스로 유인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은 주정부단계의 소득세 부과를 폐지하고 OECD가 권고하는 연계접근법에 따른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R&D 추가 소득공제(super tax deduction)임¹⁴⁾
 - 주정부단계에서 소득세 부과(cantonal tax)를 폐지하되, 감소된 주정부의 세수입을 고려하여 주정부에 배정하는 연방정부의 세수비율을 현재 17%에서 21.2%로 확대하기로 함
 - OECD Action 5에서 권고하는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을 준수하여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함
 - 연계접근법은 수익을 창출하는 실질적 활동에 연계된 수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접근법으로 납세자의 적격 연구개발지출을 한도로 조세혜택을 허용하는 것임¹⁵⁾
 - 특허박스제도에 따라, 주정부는 특허권과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의 권리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최대 90%를 면제하여 법인세 과세할 수 있음¹⁶⁾
 - R&D 추가 소득공제는 스위스에서 발생한 적격지출의 최대 150%를 한도로 소득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14) EY(<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wiss-Parliament-approves-Corporate-Tax-Reform—III>)

15) BEPS Action 5, p. 9.

16) <https://www.pwc.com/us/en/tax-services/publications/insights/assets/pwc-switzerland-passes-final-corporate-tax-reform-package.pdf>

10. 러시아-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¹⁷⁾

- 러시아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용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Federal Law 244-FZ)을 7월 3일에 발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현행 부가가치세는 국외법인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음
- 개정 과세규정은 국외법인이 국내에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15.25%의 세율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세자, 과세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함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국외법인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짐
 - 국외법인이 국내의 판매대행사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외법인이 국내의 법체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국내 판매대행사 혹은 구매자를 세무대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국외법인이 국외의 판매대행사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외법인이 국내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국외의 판매대행사 혹은 국외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되는 용역과 권리사용 등임
 -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권리사용
 - 컴퓨터 게임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의 제공
 - 인터넷을 통한 광고영역과 광고서비스의 제공

- 인터넷에 관한 정보의 처리와 저장 등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11. 벨기에-이전가격문서화의 시행

- 벨기에는 BEPS Action 13의 이전가격문서화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소득세법 1992의 321/7)을 7월 4일에 발표함
 - BEPS의 이전가격문서화와 관련하여 세단계의 표준 접근법에 따라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와 함께 법안을 시행함
 - 이전가격문서화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를 두 번째 위반하는 경우부터 1,250유로 ~25,0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 일정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포함함
 - 그룹 총매출액이 연간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세무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함
 - 특정한 경우에, 국내법인이 다국적기업의 최상위 모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 모법인을 지정하여야 함
 - 특정한 경우는 최상위 모법인의 거주국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거나, 최상위 모법인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벨기에와

¹⁷⁾ PWC(<https://www.pwc.ru/en/tax-consulting-services/assets/legislation/tax-flash-report-2016-32-eng.pdf>)



해당 국가 사이에 국가별 보고서가 자동 교환되지 않는 경우 등임

- 또한, 이전가격문서화와 관련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기업·고정사업장에 대한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총자산, 수익, 직원의 수를 기준으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 혹은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대상임
 - 총자산이 10억유로 이상인 경우
 - 영업이익과 금융수익이 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 연간 평균 직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마스터파일을 제출하고 법인세의 전자신고시 로컬파일을 제출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 비EU 시민권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가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i) 거주 요건, (ii) 근로계약 요건, (iii)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i) 거주요건: 직전 5개년간 이탈리아의 거주자가 아니었으며, 향후 최소 2년간 이탈리아에서 근무할 계획이어야 함
- (ii) 이탈리아 법인 또는 이탈리아 법인의 관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탈리아에서 18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 (iii) 근로자는 관리직이거나 고등교육 수료자여야 함

■ EU 시민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5년간의 비거주자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학사학위 취득 후 이탈리아 외의 국가에서 2년간 근무한 경우 적격근로자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12. 이탈리아-이주근로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발표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16년 6월 8일, 이주근로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발표함¹⁸⁾
 - 적격 이주근로자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일자가 속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30%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13. 이탈리아-성실납세자를 위한 예규신청 간소화 규정 발표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16년 6월 27일, 납세협력프로그램(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me)에 참여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규신청 간소화 규정을 발표함¹⁹⁾
 - 납세협력프로그램은 적격 대규모 납세자의 조세

¹⁸⁾ Italy—New tax regime available to inward expatriates—Ministerial Decree published (09 June 2016), News IBFD.,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pdf/2016/06/tmf-italy-jun28-2016.pdf>

¹⁹⁾ Italy—Tax ruling procedure for taxpayers joining 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me—Ministerial Decree published(28 June 2016), News IBFD.,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6/07/tmf-italy-fast-track-advance-tax-ruling-process.html>

관련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예규신청 간소화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예규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구속력 있는 예규(binding ruling)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과세당국은 일반적인 예규신청에 대해서는 90일 또는 120일 내에 답변을 제공하여야 함
 - 간소화 규정에 따른 예규신청에 대한 과세당국의 답변은 예규신청자의 특정한 질의사항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 45일 내에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가 예규신청서에 작성한 세법 해석 내용을 과세당국이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14. 뉴질랜드-투자소득 과세절차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 개시²⁰⁾

- 뉴질랜드 국세장관은 2016년 7월 7일, 투자소득 과세절차 개정을 위한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이러한 논의는 고령화에 따른 투자소득이 증가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세절차의 구축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원천징수정보 보고 강화, 불필요한 절차 완화 및 기타 관련 제반 절차 등을 다루고 있음
 - 이 제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입법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보다 효과적인 투자소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원천징수정보 보고의무기간의 단축, 미확인 소득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단일 원천징수세율 적용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소득지급자에게 원천징수정보 보고의무를 연말에서 소득이 지급되는 월의 다음 달로 주기를 축소함
- 납세자 정보에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자번호(IRD Number), 고객성명 · 주소 · 생년월일을 포함함
 - 공동투자인 경우 각각의 정보를 기재함
- 납세자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는 수취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non-declaration rate)을 45%로 인상 통일함
 - 확인되지 않는 수취자에 대한 현행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구분 및 지급받는 자의 형태 등에 따라 28~45%로 다양함

- 과세관청은 지급자로부터 수취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취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절차를 완화함
 - 납세자번호(IRD Number)를 제공한 고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는 연말 납세확인서(end of year tax certificates)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 소득지급자의 의무이행 편의와 부적절한 원천징수 면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원천징수면제를 받는 납세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서는 면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²⁰⁾ Minister of Revenue, Making tax simpler: Investment income information, A Government Discussion Document, July 2016.



15. 뉴질랜드-BEPS Action 관련 계획 공개²¹⁾

- 뉴질랜드 국세장관은 2016년 6월 27일, BEPS 관련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담은 문서를 공개함
 - 문서에서 뉴질랜드 국제조세규정은 이미 국제적 요구사항에 부합하지만 일부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주요 개선분야를 보다 강건한 세법, 국제적 협력 참여, 투명성과 정보교환 증진으로 구분하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강력한 조세법에서는 세원을 보호하고 이중비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강력한 CFC규정과 과소자본세제, 은행최소자본 규정,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과세를 이미 도입하였음
 - 최근 입법에서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와 승인된 발행자 부과금(Approved Issuer Levy)을 강화하고²²⁾,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조세조약에 우선함을 재확인함
 - 향후 혼성불일치규정 및 이자비용공제제한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여 2017년 3월에 입법할 예정임
 - BEP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타 수단들을 고려할 것임
 - 이러한 예로 영국과 호주에서 채택한 우회수익세를 예시하고 있음

- 국제적 합의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ECD와 조약의 타방체약국과 공조할 필요성을 강조함
 - 이미 2012년에 다자간상호공조협약에 서명하였음
 - 조약남용방지 규정,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혼성체방지규정 및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하는 OECD 다자간협약에 서명할 것이며, 개정된 OECD 이전 가격지침을 2017년 3월에 입법하여 적용할 예정임
 - 재산 은닉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주요 외국기업들의 소득이전을 모니터하기 위해 국제적 질문서를 운영하고, 미국 FATCA를 시행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할 예정이며, OECD 제안에 따라 국가별 보고를 도입하고 있음
-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6. 뉴질랜드-국내로 유입되는 투자에 대한 과세체계 정책보고서 공개²³⁾

- 뉴질랜드 재무부 등은 2016년 6월 27일, 국내로 유입되는(inbound) 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루는 정책보고서를 공개함
 - 이 보고서는 현행 과세체계 및 미래 변화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완전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지만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

21) Inland Revenue, New Zealand's plan to ensure multinationals pay their fair share of tax, June 2016. & Office of the Minister of Revenu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Update on the New Zealand Work Programme, June 2016.

22) 「조세동향」(16-05호) 참조

23) Policy and Strategy, Inland Revenue, and the Treasury, New Zealand's taxation framework for inbound investment: A draft overview of current tax policy settings, June 2016.



- 주요 결론은 국내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 세원보호조치의 필요, 원천징수세 부과 효과성 확인 등임
- 국내유입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완벽할 수 없지만, 현행 뉴질랜드 세제는 합리적이며 향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BEPS에 대응하는 것임
- 뉴질랜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기업에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비거주자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것이 뉴질랜드의 목표임
 - 이러한 과세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정부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음
- 과소자본세제나 이전가격규정과 같은 세수보호조치는 세원보호에 합리적이면서 뉴질랜드의 공정한 세수확보를 증진시키고 있음
- 관계기업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법인세를 보완하면서 국제과세배분에 있어 뉴질랜드의 세수배분을 정당하게 보호하고 있음
- BEPS 측면에서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지만, BEPS 대응조치는 필요함
 - 혼성불일치와 강화된 이자공제제한이 현재 고려 중에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7. 중국-이전가격 문서화 및 거래 보고에 대한 공지 공개²⁴⁾

- 중국 과세관청은 2016년 6월 29일, 이전가격 문서화 및 거래 보고에 대한 공지 42를 공개함
 - 공지는 관계기업 및 관련거래의 식별과 보고, 동시적 문서화 및 관련 행정절차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이 공지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관련된 이전의 공지 2009년 2호의 일부와 2008년 114호를 폐지함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함
 - 연 연결매출 55억위안을 초과하는 다국적그룹의 최상위 회사이면서 중국 거주자이거나 다국적기업이 신고대상회사로 지정한 중국 거주자인 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면 납세자에게 보고의무 면제를 적용함
 - 매년 소득세 납세신고기간인 5월 31일까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특수항목에 대한 보고의 3단계계로 이루어져 있는 동시적 문서화를 요구함
 - 동시적 문서화는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특수항목에 대한 보고로 나누어 적용됨
 - 마스터파일은 조직구조, 기업사업 등의 내용이, 로컬파일은 거래가격의 결정요소, 가치결정분석, 국외투자 등의 내용이, 특수항목은 원

24) 国家税务总局, 关于完善关联申报和同期资料管理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 2016年6月29日.



가부담약정과 과소자본세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마스터파일은 기업이 최종모회사이거나 연간 관계기업거래가 1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로컬파일은 연간 매출/매입거래가 2억위안 초과하거나 여타 거래가 4천만위안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의무가 부여됨
 - 국가 내에서의 관계기업과의 거래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서화 의무가 면제되며, 국외거래시 사전합의제도가 적용되는 거래만 존재한다면 로컬파일과 특수항목 보고의무는 면제됨
- 마스터파일은 최종모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로컬파일과 특수항목보고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8. 일본-이전가격문서화 지침 공개²⁵⁾

- 일본 과세관청은 2016년 6월 30일, 이전가격문서화 개정에 따른 지침을 공개함
 - 이는 BEPS Action 13에 따라 이전가격문서화가 개정되어²⁶⁾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임
 - 세부지침은 로컬파일 작성에 따른 예시, 최종모회사의 신고사항 및 대표 신고자에 관한 사항, 국가별 보고서 보고사항, 사업개황(마스터파일)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신고양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이전가격세제 문서화제도 개정의 대강에서는 보고 의무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전 기간 연결매출액이 1천억엔 이상인 일본법인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은 최종모기업에 대한 공지, 국가별 보고 및 마스터파일을 보고해야 함
 - 최종모기업에 대한 공지는 최종모기업의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국가별보고와 마스터파일은 최종모기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보고대상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로컬파일을 법인세신고시까지 제출하도록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9. 싱가포르-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적용 지침 공개²⁷⁾

- 싱가포르 과세관청은 2016년 7월 11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 요건과 이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공개함
 - 지침은 세법에 따른 GAAR의 요건으로 기존 판례에 따라 구조와 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순환흐름·라운드트립핑, 세제혜택만을 위한 실체의 설립, 경제적 실질이 없는 소득 배분 등의 GAAR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25) 国税庁(<http://www.nta.go.jp/sonota/kokusai/takokuseki/index.htm>).

26) 「조세동향」(16-01호) 참조

27)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ncome Tax: The 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 and its Application (First Edition), IRAS e-Tax Guide, 11 Jul 2016.

- 싱가포르의 GAAR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판례에서 채용한 원칙에 기반하여 구성요건이 성립함
 - 이전 항소법원 판례²⁸⁾에서 적용된 “구조와 목적 접근방법(scheme and purpose approach)”에 따라 GAAR이 적용됨
 - 이러한 접근방법은 조세부담의 회피에 대한 증거, 거래의 상업적 원인 및 주목적, 입법의 취지를 고려하는 3단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 약정을 통해 조세부담 등의 이전 · 감소가 이루어지도록 약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야 함(prima facie)
 - 순수한 상업적 원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조세회피가 주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면 배제함
 - 납세자가 전체 약정의 맥락에서 법적 형식이나 경제적 실질의 의도된 범위가 입법부의 고려와 목적 내에서 특별조항을 이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 배제함
- 이외에 지침에서는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GAAR이 적용되는 조세회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펀드의 순환흐름(circular flow) 또는 라운드트립핑(round-tripping) 거래는 납세자의 투자실질 변경 없이 다른 특수관계인의 비용을 직 · 간접적으로 공제하고 수취하는 실체에서는 비과세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세제혜택의 목적만을 위한 실체 설립 또는 기업 실체 변경은 세제혜택 또는 면제 등을 최대한 적

용받기 위해 실체를 설립하는 것임

- 경제적 실질이 없는 소득의 귀속은 경제적인 근거 없이 하나의 인(人)에서 다른 인(人)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20. 유럽연합-조세회피방지지침 합의 결정 발표

- EU위원회(EU Commission)는 2016년 6월 21일,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²⁹⁾에 대한 EU회원국 간의 합의를 발표함³⁰⁾
 - 조세회피방지지침은 지난 1월 조세회피방지패키지(Anti-Tax Avoidance Package)의 일환으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수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름
- 동 지침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응하여 EU회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5개의 최소기준을 제시하며 EU회원국은 2018년 말까지 최소기준을 입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함
 - 이자비용공제제한: 법인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30%를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함
 - 출국세: 기업의 거주지이전(residence migration) 및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과 본사 사이의 자산 이전 시 납세자의 원거주지국 또는 자산의 소재지국에서 자산양도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함

28) CIT v AQQ [2014] SGCA 151.

29)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0426-2016-INIT/en/pdf>

30)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886_en.htm;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pdf/2016/06/tnt-eu-june-21-2016.pdf>



-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정된 인위적 거래에 대해서는 동기(motive test)와 실질(substance test)을 판단기준으로 조세혜택 적용을 부인함
- CFC규정: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효세율이 EU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유효세율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CFC를 적용하여 외국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함
- 혼성불일치 해소: EU회원국 간의 혼성체 또는 혼성상품거래에 있어 이중공제(double deduction)의 경우 원천지국에서만 공제를 허용하며,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deduction without inclusion) 그러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지난 1월 제안된 조세회피방지패키지와 최종 지침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스위치오버(switch-over)제도 포함 여부, 이자비용공제제한 도입시기, CFC규정 적용 대상 외국자회사, 혼성불일치해소 대상 거래 범위 등이 있음³¹⁾
 - 스위치오버 제도는 최종 지침에서 제외함
 - 이자비용공제제한 도입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여 202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CFC규정 적용 대상에 EU회원국에 소재한 외국자회사도 포함함
 - 기존에는 EU지역 외에 소재한 외국자회사만

CFC규정 적용 대상 자회사로 함

- 혼성불일치해소규정 적용 대상거래를 EU내 거래로 한정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21. 유럽연합-「법인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고서」 채택

- EU의회는 2016년 7월 6일, 특별위원회(TAXE2)의 「EU의 법인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고서」³²⁾를 채택함³³⁾
 - 특별위원회(TAXE2)는 EU회원국 간 불공정한 조세경쟁과 조세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EU회원국의 예규 관련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임
- 동 보고서는 공격적 조세회피전략 및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조세관할지역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
 - 비협조적 조세관할지역에 대한 블랙리스트 및 제재 강화: 조세피난처에 대한 블랙리스트 요건을 EU 차원에서 제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하여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
 - EU지역의 원천징수 강화: 외국기업이 EU지역에서 창출하는 소득은 EU지역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과세될 수 있도록 하여 원천지국에서의 세원

31)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pdf/2016/06/tmf-eu-june-21-2016.pdf>

32) Report on tax rulings and other measures similar in nature or effect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NONSGML+REPORT+A8-2016-0223+0+DOC+PDF+V0//EN>)

33)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NONSGML+REPORT+A8-2016-0223+0+DOC+PDF+V0//EN>;

잠식을 방지함

- 특허박스(patent box) 남용 방지: 특허박스는 그 취지와 달리 R&D활동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EU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함
- 조세대리인 감독 강화: 은행, 조세자문가 등이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에 중대하게 연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회계법인 등의 감사 및 세무자문 서비스 관련 지침 수정을 검토함
- 내부고발자 보호: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 차단에 있어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내부고발자와 관련 언론인 등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마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 동 협의문서는 이익분할법 적용과 관련된 총 18개의 질의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의견제시 기한은 2016년 9월 5일임
- 의견수렴을 걸친 최종지침은 OECD이전가격지침서의 제2장 이전가격방법(Transfer Pricing Methods)의 관련내용을 대체하게 됨

■ 본 협의문서는 이익분할법 적용과 관련하여 보다 분명한 지침 수립을 위해 관련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질의를 포함함

- 이익분할법의 두 가지 접근법인 실제이익접근법(actual profit approach)과 추정이익접근법(anticipated profit approach)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논의함
- 각 접근법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상황에 대해 논의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22. OECD-BEPS프로젝트 Action8-10 이익분할법 관련 수정지침에 대한 협의문서 발표

- OECD는 2016년 7월 4일, BEPS프로젝트 Action 8-10에서 다루는 이익분할법(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의 수정지침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문서³⁴⁾를 발표함³⁵⁾

23. OECD-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 소 득귀속 관련 추가지침에 대한 협의문서 발표

- OECD는 2016년 7월 4일, BEPS프로젝트 Action 7의 후속 작업으로 고정사업장 소득귀속의 추가지침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문서³⁶⁾를 발표함³⁷⁾

34) <http://www.oecd.org/tax/transfer-pricing/BEPS-discussion-draft-on-the-revised-guidance-on-profit-splits.pdf>

35) <http://www.oecd.org/tax/beps/release-of-beps-discussion-drafts-on-attribution-of-profits-to-permanent-establishments-and-revised-guidance-on-profit-splits.htm>;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OECD_releases_discussion_drafts_on_profit_splits_attribution_of_profits_to_permanent_establishments_and_conforming_amendments_to_OECD_Chapter_IX_on_business_restructurings/\\$FILE/2016G_02042-161Gbl_OECD%20releases%20drafts%20on%20profit%20splits,%20attribution%20of%20profits%20to%20PEs%20and%20TPG%20business%20restructuring.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OECD_releases_discussion_drafts_on_profit_splits_attribution_of_profits_to_permanent_establishments_and_conforming_amendments_to_OECD_Chapter_IX_on_business_restructurings/$FILE/2016G_02042-161Gbl_OECD%20releases%20drafts%20on%20profit%20splits,%20attribution%20of%20profits%20to%20PEs%20and%20TPG%20business%20restructuring.pdf)

36) <http://www.oecd.org/tax/transfer-pricing/BEPS-discussion-draft-on-the-attribution-of-profits-to-permanent-establishments.pdf>

37) <http://www.oecd.org/tax/beps/release-of-beps-discussion-drafts-on-attribution-of-profits-to-permanent-establishments-and-revised-guidance-on-profit-splits.htm>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6/07/tmf-oecd-discussion-draft-under-beps-action-7-profits-attributed-to-permanent-establishments.html>



-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총 21개의 질의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의견제시 기한은 2016년 9월 5일임
-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고정사업장 소득 귀속 규정은 양자조세조약 개정 또는 다자간협약 체결을 통해 조세조약에 반영됨

■ 본 합의문서는 Action 7에 따라 새로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기존 OECD 모델조세협약상 소득귀속 규정의 적용 문제를 4가지 예시를 통해 논의하고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함

- Action 7에 따라 새로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deemed permanent establishment) 대표적인 사업행위 또는 사업장은 ‘중속대리인’과 ‘고정된 사업장으로서의 창고’ 등이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24. OECD-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약에 한국 등 5개국 추가 서명

- 2016년 6월 30일 일본에서 개최된 BEPS프로젝트 포용적 체계 첫 회의에서 한국 등 5개국이 추가로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함³⁸⁾

ent, “MCAA”)에 서명함³⁸⁾

- MCAA에 추가 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조지아, 우루과이, 쿠라소 등 5개국이며, 이로써 MCAA를 체결한 국가는 현재 총 44국³⁹⁾에 달함
- OECD국가 중 MCAA 미체결국으로는 미국, 헝가리, 터키, 라트비아 등 4개국이 있음

- 한편 처음으로 개최된 BEPS프로젝트 포용적 체계 (inclusive framework) 회의에는 8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석하여 BEPS프로젝트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이행 등 BEPS 관련 현안을 논의함
- 2016년 7월 15일 현재 BEPS회원국은 총 85개국임⁴⁰⁾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25. OECD-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 보고서 관련 추가 이행지침 발표

- OECD는 2016년 6월 29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국가별 보고서 이행과 관련된 추가 지침⁴¹⁾을 발표함⁴²⁾
- 본 지침에서는 (i) 국가별 보고서 도입 과도기 기간 중 자발적 신고 방안, (ii) 투자펀드의 신고 지침, (iii) 파트너십의 신고지침, (iv) 국가별 보고서 신고대상 기준 매출액 7억 5천만유로에 대한

38) <http://www.oecd.org/tax/beps/first-meeting-of-the-new-inclusive-framework-to-tackle-base-erosion-and-profit-shifting-marks-a-new-era-in-international-tax-co-operation.htm>

39)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about-automatic-exchange/CbC-MCAA-Signatories.pdf>

40) <http://www.oecd.org/tax/beps/inclusive-framework-on-beps-composition.pdf>

41) <http://www.oecd.org/tax/exchange-of-tax-information/guidance-on-the-implementation-of-country-by-country-reporting-beps-action-13.pdf>

42) <http://www.oecd.org/tax/new-steps-to-strengthen-transparency-in-international-tax-matters-oecd-releases-guidance-on-the-implementation-of-country-by-country-reporting.htm>

환율 변동 관련 고려사항을 포함함

- (i) 과도기 기간의 자발적 신고: 국가별 보고서 이행시기가 국가별로 상이하여 초래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법인이 해당 거주국에서 입법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제시함
- (ii) 투자펀드의 국가별 보고서 신고: 회계기준상 연결대상 피투자법인은 국가별 보고서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회계상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투자법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iii) 파트너십의 국가별 보고서 신고: 투자펀드의 경우와 같이 회계기준을 따라 신고하되, 파트너십이 어떠한 조세관할지역의 거주자도 아닌 경우 '무국적 단체(stateless entity)'로 분류하여 신고함
- (iv) 환율 변동에 대한 고려사항: 신고대상 기준인 연결기준 총매출액 7억 5천만유로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근사치 금액(near equivalent amount)'으로 기준금액으로 할 것을 권고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 이자비용 공제제한의 그룹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총 14개의 질의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의견제시 기한은 2016년 8월 16일임

- 본 협의문서는 Action 4 최종보고서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이자비용 공제제한 접근법 중 하나인 그룹비율규정(group ratio rule)과 관련된 기술적 세부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함
- Action 4 최종보고서는 이자비용제한 접근방법으로 '고정비율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규정'을 제시하였음
- 그룹비율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i) 그룹의 제3자 순이자비용(이자비용-이자수익) 계산
 - (ii) 그룹-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income and expense,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계산
 - (iii) 손실기업(마이너스 EBITDA)에 대한 고려사항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26. OECD-BEPS프로젝트 Action 4 이자비용공제제한 관련 그룹비율 규정에 대한 협의문서 발표

- OECD는 2016년 7월 11일 BEPS프로젝트 Action 4 이자비용 공제제한의 그룹비율 산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문서⁴³⁾를 발표함⁴⁴⁾

43) <http://www.oecd.org/tax/beps/discussion-draft-beps-action-4-elements-of-the-design-of-group-ratio-rule.pdf>

44)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discussion-draft-on-the-design-and-operation-of-the-group-ratio-rule-under-beps-action-4.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more&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1-07-2016&utm_term=demo



27. OECD-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 대응 관련 조세예규 교환을 위한 표준 IT포맷 발표

- OECD는 2016년 7월 11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 대응 관련 조세예규 교환을 위한 표준 IT포맷을 발표함⁴⁵⁾
 - Action 5에 따른 조세예규교환(exchange of tax rulings, “ETR”)은 BEPS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기존 예규 교환에 대한 과세당국 간 교환은 2016년 말까지 이루어져야 함
- 과세당국 간 조세예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환을 위해 ETR XML Schema를 표준 IT포맷으로 도입 함
 - Schema는 전자정보를 보유·전달하는 데이터구조이며,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이를 위해 널리 쓰이는 장치임
 - XML Schema는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 OECD 공통보고기준(Common Standard Reporting Standard)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음
 - XML Schema와 함께 사용자설명서를 함께 배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 정보와 내용을 국가 간에 통일성 있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28. OECD-OECD와 UN등 주요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 조세역량개발 국제협력의 효과성 제고 보고서」 발표

- OECD, UN, IMF, World Bank 등으로 구성된 조세협력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은 2016년 7월 25일 G20재무장관회의에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개발 국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고서」⁴⁶⁾를 제출함⁴⁷⁾
 - G20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 2월 조세협력 플랫폼에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도록 요청함
- 동 보고서는 각 국제기구들의 조세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험에 비추어 성공적인 역량개발사업의 성공 요소와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 함
 - 특정 국가의 조세역량 강화는 해당 국가 정부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
 - 국제사회는 G20 및 국제기구를 통해 각 정부들에 개발을 위한 자원 조달에서 조세역량 강화의 중요성 강조
 - 조세개혁 등 국가 주도적인 중장기 세수전략 설계 지원
 - 세무자문가, 시민사회, 기업 등 비정부기관에 대

45)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standardised-it-format-for-the-exchange-on-tax-rulings-under-beps-action-5.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more&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1-07-2016&utm_term=demo

46)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xternal Support in Building Tax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http://www.oecd.org/tax/enhancing-the-effectiveness-of-external-support-in-building-tax-capacity-in-developing-countries.pdf>)

47) <http://www.oecd.org/tax/report-by-the-platform-for-collaboration-on-tax-to-the-g20-enhancing-the-effectiveness-of-external-support-in-building-tax-capacity-in-developing-countries.htm>



한 지원 강화

- 개발도상국 과세관청의 관리 및 지식 역량개발을 위한 개발협력기구의 지원
- 개발협력기구들의 지원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IMF

■ World Economic Outlook(WEO), April 2015 발표(2016.4.14.)¹⁾

- (세계경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3.2%, 2017년 3.5%로 전망
 - (선진국) 2015년 말 경제 약세를 반영하여 2016년 1월 전망과 비교해 소폭 하락한 2016년 1.9%, 2017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신흥국)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브라질과 러시아 등의 거대 신흥국 거시경제 또한 악화되어 2016년 4.1%, 2017년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 전망) 석유수출국의 경기악화, 중국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선진국 대부분이 2016년 1월 발표된 WEO update 전망치 대비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됨
 - (미국)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2016년에 2.4%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2017년에 성장세가 조금 더 높아질 전망
 - (유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지만 높은 부채, 낮은 투자 등의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 2016년에 1.5%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일본) 엔화가치 상승과 신흥국 수요 부진이 경기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2016년 0.5% 경제성

장률을 기록할 전망

- (한국) 2015년에 중국 수요 부진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2016년에 2.7%의 성장을 기록하고, 2017년에는 중국의 수요가 회복되며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
- (중국) 산업부문의 약세가 예상되는 등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2016년 6.5%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위험요인) WEO update에서 지적한 하방위험요인들이 강화됨
 - 신흥국의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요인 증가
 - 중국의 경제 전환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석유수출에 의존적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제약의 확대
 - 신뢰도 및 성장에 대한 금융시장 변동성
 - 신흥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
 - 지정학적 위험요인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 (정책제언) 선진국은 실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신흥국은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
 - (선진국) 구조개혁, 통화완화정책(monetary policy accommodation) 지속, 성장 친화적 재정지원 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함
 - (신흥국) 거시경제 및 금융 취약성(vulnerabilities)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회복력(resilience)을 제고해야 함

¹⁾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01/index.htm>
 보고서 원문: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01/pdf/text.pdf>

〈표 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2014	2015	Projections		Difference from January 2016 WEO Update		Q4 over Q4		
							Projections		
			2016	2017	2016	2017	2015	2016	2017
World Output ¹⁾	3.4	3.1	3.2	3.5	-0.2	-0.1	2.9	3.3	3.4
Advanced Economies	1.8	1.9	1.9	2.0	-0.2	-0.1	1.8	2.1	1.9
United States	2.4	2.4	2.4	2.5	-0.2	-0.1	2.0	2.6	2.4
Euro Area ²⁾	0.9	1.6	1.5	1.6	-0.2	-0.1	1.6	1.6	1.5
Japan	0.0	0.5	0.5	-0.1	-0.5	-0.4	0.8	1.1	-0.8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³⁾	4.6	4.0	4.1	4.6	-0.2	-0.1	3.9	4.5	4.7
World Trade Volume(goods and services)	3.5	2.8	3.1	3.8	-0.3	-0.3	-	-	-
Commodity Prices(U.S. dollars)									
Oil ⁴⁾	-7.5	-47.2	-31.6	17.9	-14.0	3.0	-43.4	-10.3	12.2
Nonfuel	-4.0	-17.5	-9.4	-0.7	0.1	-1.1	-19.1	-2.9	0.5
Consumer Prices									
Advanced Economies	1.4	0.3	0.7	1.5	-0.4	-0.2	0.4	0.8	1.8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³⁾	4.7	4.7	4.5	4.2	0.2	0.1	4.6	4.1	3.8

참고: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015년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국가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지 않은 경우 경제 규모에 근거하여 정렬되었으며 집계된 분기 자료는 계절 조정. 리투아니아는 WEO update Jan 2015에서 신흥개도국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에 포함

주: 1)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4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96.25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5년 58.14달러, 2016년 65.65달러

2)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EO April 2016, Table 1.1.

■ Fiscal Monitor, April 2016 발표(2016.4.13.)²⁾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지표가 악화되었고, 신흥국과 중위소득국가(middle-income economy)에 선 재정악화의 정도가 두드러져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시점보다 재정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석유 수출국)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향후 5년 동안의 재정수지 악화 정도는 석유가격

이 가장 높았던 2004-2008년과 비교했을 때 2조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의 공공채무, 낮은 인플레이션, 더딘 성장 등으로 인해 선진국 재정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성장을 강화하고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중요함
- (선진국) 대부분의 선진국 정책 금리가 0에 근

2)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ft/fm/2016/01/fmindex.htm>
보고서: <http://www.imf.org/external/pubs/ft/fm/2016/01/pdf/fm1601.pdf>



접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단기와 중기의 성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 시행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중국) 재정개혁은 경제의 재균형(rebalancing)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함
- (원자재 수출국) 한정된 자원 내에서 공공지출을 재편성하여야 함
- (신흥국)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 예산 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현재의 재정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의 한계점이 노출되었는데, 각국은 위험관리전략을 개발해야 함

- (신흥국) 원자재 가격, 자본이동, 환율의 변화 폭이 커질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함

- (석유수출국) 재정수입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버퍼(fiscal buffer)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표 2〉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Projections		Difference from October 2014 Fiscal Monitor		
	2014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Overall Balance							
World	-2.9	-3.6	-3.6	-3.1	-0.1	-0.7	-0.7
Advanced Economies	-3.3	-3.0	-2.9	-2.5	0.3	-0.2	-0.3
United States ¹⁾	-4.1	-3.7	-3.8	-3.7	0.5	0.5	-0.3
Euro Area ²⁾	-2.6	-2.0	-1.9	-1.5	0.2	-0.3	-0.2
Japan	-6.2	-5.2	-4.9	-3.9	1.0	0.1	0.4
Emerging Market Economies	-2.4	-4.5	-4.7	-4.1	-0.8	-1.4	-1.3
Cyclically Adjusted Balance							
Advanced Economies	-1.1	-0.9	-1.0	-0.8	-0.9	-1.0	-0.8
United States ¹⁾	-1.5	-1.1	-1.4	-1.4	-1.1	-1.4	-1.4
Euro Area ²⁾	1.1	1.1	0.8	0.8	-0.1	-0.4	-0.4
Japan	-5.2	-4.6	-4.4	-3.5	0.9	0.0	0.2
Emerging Market Economies	-0.6	-1.6	-1.8	-1.3	-0.7	-0.8	-0.6

주: 1)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적용

2) EU회원국들은 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ESA 2010) 적용

출처: IMF, *Fiscal Monitor April 2016*, Table 1.1a & Table 1.1b

〈표 3〉 일반정부 부채

(단위: GDP 대비 %)

			Projections		Difference from October 2014 Fiscal Monitor		
	2014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World	79.6	81.3	83.6	83.4	1.0	3.6	4.1
Advanced Economies	105.6	105.8	107.6	107.0	0.4	2.5	2.8
United States ¹⁾	105.0	105.8	107.5	107.5	0.8	2.6	3.2
Euro Area ²⁾	94.5	93.2	92.5	91.3	-0.4	0.1	0.5
Japan	249.1	248.1	249.3	250.9	1.9	2.4	2.3
Emerging Market Economies	41.5	45.4	47.5	49.0	1.5	2.9	3.9

주: 1)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적용

2) EU회원국들은 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ESA 2010) 적용

출처: IMF, *Fiscal Monitor April 2016*, Table 1.2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 OECD, 일본에 대한 정책보고서(*Japan: Boosting Growth and Well-being in an Ageing Society*) 발표(2016.4.11.)^{3) 4)}
 - (배경) 일본은 빠른 인구고령화와 성장률 둔화로 인해 국가채무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결정적인 정책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
 - (정책 권고) 생산성 제고, 일-가정 양립,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다음의 정책 권고를 제시
 - (재정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 확보) 2020년까지 재정 흑자 목표 달성을 위해 지출 감축 및 수입 증대의 전략 이행과 점진적인 중장기

- 채무비율 감축을 통해 재정에 대한 신뢰 유지
- 점진적 소비세율 인상, 직접세 과세기반 확대, 환경 관련 조세 증대,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사회지출 프로그램 개혁
 - ☞ 저소득층 부담 축소 등 조세 · 사회보장제도의 누진성 강화, 근로장려세제 도입
- (무역 통합 강화) 농업시장 점진적 개방, 무역협정(복수국가 · 지역 · 부문) 협상 지속,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
- (기업 부문 활력 제고) 사회서비스 등 생산시장 규제 축소, 순환출자 축소, 기업지배구조 규정⁵⁾ 이행 지원 및 감시 등

3) 출처: OECD, <http://www.oecd.org/newsroom/japan-will-need-reforms-to-ease-economic-blow-of-a-shrinking-workforce.htm>

4) OECD Better Policies Series는 각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제공. 한편 같은 날 발표된 일본에 대한 지역 검토보고서(OECD Territorial Reviews: Japan 2016)는 인구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공간계획과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 증대와 노동시장 참여 제고가 중요하며 지역 기반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힘

5) stewardship code 및 corporate governance code



- (혁신 성과 제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 지식기반자산 투자 환경 개선, 연구 인력의 국제적 이동 제고 등
- (노동시장의 역량 활용 개선) 교육과정 설계 시 고용주의 참여 등 양질의 업무기반학습(work-based learning)을 모든 직업 및 학업 프로그램에 통합, 노년층의 ICT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 (일과 가정 양립) 부모 모두 노동 참여에 비슷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갖도록 조세 및 보조금 시스템 개선, 빈곤층과 맞벌이 여성을 우선으로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 등
- (녹색 성장 강화)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고 발전 차액제원제도의 유연성을 개선하면서 재생에너지 지원 지속
-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정책 재고) 정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정부 간 협약과 주요 도시 시설 합병(집중화) 등을 통해 3대 도시⁶⁾ 이외의 도시 간 협력 강화
- (도시 중심의 재난에 대한 회복력 제고)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정보기술 활용과 융합해 “National Resilience Strategy” 강화

■ OECD, 2015년 4분기 OECD국가 GDP 성장률의 기여도 발표(2016.4.7.)⁷⁾

- (OECD 전체) 2015년 4분기 OECD GDP 성장률

은 민간소비 증가 둔화를 반영해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

- (성장률) OECD 전체 국가의 2015년 4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0.4%로 전분기 대비 0.1%p 감소
- (기여도) GDP 성장률 기여도는 민간소비가 0.3%p(전분기 대비 0.1%p 감소), 정부소비와 투자는 0.1%p(전분기 동일), 재고 증감은 0.1%p(전분기 대비 0.1%p 증가), 순수출은 -0.1%(전분기 대비 0.1%p 감소)로 나타남
- (G7 국가) 거의 모든 G7국가에서 민간소비의 GDP 기여도가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이탈리아, 영국, 미국은 여전히 민간소비가 GDP 성장을 주도함
- 2015년 4분기에 이탈리아와 미국은 민간소비, 캐나다는 순수출, 프랑스는 재고증가, 독일은 총자본형성, 영국은 민간소비 및 재고증가가 GDP 성장을 주도함
- 2015년 4분기에 일본은 민간소비가 상당히 감소함에 따라 GDP도 하락하였으나 정부소비와 순수출이 GDP 감소를 완화함

⁶⁾ 도쿄, 오사카, 나고야

⁷⁾ 출처: OECD, <http://www.oecd.org/economy/contributions-to-gdp-growth-fourth-quarter-2015-oecd.htm>

〈표 4〉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순수출	재고증감	GDP 성장률(%)
OECD 전체	Q3 15	0.4	0.1	0.1	0.0	0.0	0.5
	Q4 15	0.3	0.1	0.1	-0.1	0.1	0.4
캐나다	Q3 15	0.3	0.0	-0.3	1.0	-0.4	0.6
	Q4 15	0.1	0.1	-0.4	0.6	-0.3	0.2
프랑스	Q3 15	0.2	0.1	0.0	-0.6	0.7	0.4
	Q4 15	-0.1	0.1	0.1	-0.5	0.6	0.3
독일	Q3 15	0.4	0.1	0.0	-0.3	0.1	0.3
	Q4 15	0.1	0.2	0.3	-0.5	0.1	0.3
이탈리아	Q3 15	0.3	0.0	0.0	-0.3	0.2	0.2
	Q4 15	0.2	0.1	0.1	0.1	-0.4	0.1
일본	Q3 15	0.2	0.0	0.0	0.2	-0.2	0.3
	Q4 15	-0.5	0.1	0.0	0.1	0.0	-0.3
영국	Q3 15	0.4	0.1	0.1	-1.1	0.9	0.1
	Q4 15	0.4	0.1	-0.2	-0.3	0.4	0.6
미국	Q3 15	0.5	0.0	0.2	-0.1	-0.2	0.5
	Q4 15	0.4	0.0	0.0	0.0	-0.1	0.3

주: Contributions may not sum to GDP growth due to rounding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호주

1. 기타

- 호주 톰볼 정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혜택(tax incentives) 도입(2016.3.15.)⁸⁾
 - 이는 지난 2015년 12월에 발표한 11억호주달러 규모의 혁신개혁안 NISA(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 조치 중 하나로 2016년 7

월부터 시행 예정

- (초기 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 신생 및 창업기업 투자에 20%의 세금 감면(tax offset), 12개월 이상 투자자에 대해 향후 10년 내 투자한 주식지분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
 -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한도는 1년에 20만달러
- (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

8) 출처: 호주 재무부 장관 홈페이지, <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29-2016/>
NISA 웹페이지, <http://www.innovation.gov.au/>



ships, ESVCLP) ESVLCP 프로그램에 등록된 투자펀드로부터의 자금 지원 등에 대해 10%의 세금 감면

- 신규 및 기존 등록펀드의 최대 규모를 1억호주 달러에서 2억호주달러로 증가

■ 호주 턴볼 정부, 성장 및 고용 진작을 위해 경쟁 정책(competition policy) 수정(2016.3.16.)⁹⁾

- 경쟁 정책에 관한 일명 하퍼 리뷰(Harper Review) 보고서¹⁰⁾의 제안에 따라 ‘호주 경쟁 및 소비자에 관한 법률(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46절(시장지배력 조항에 대한 오용)을 수정 예정
-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 불공정 계약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쟁과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

■ 호주 생산성위원회, “Superannuation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연금 효율성과 경쟁력)” Issue Paper 발표(2016.3.16.)¹¹⁾

- 본 보고서는 연금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쟁력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범위와 위원회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8월에 초안, 11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 계획
- 호주 정부는 생산성위원회에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효율성 및 경쟁력에 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효율성 및 경쟁력 평가 기준 마련과 지표 설정 등에 대한 연구와 대체모델 개발 조사를 두 단계에 걸쳐 수행할 계획

- 약 9개월 내에 연구를 완료하고, 18개월 내 특정한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적립금을 연금기금에 배정하는 경쟁 방식의 대체 방안을 조사

■ 호주 재무부, 호주의 미래 금융기술 ‘핀테크(FinTech)’에 관한 성명 발표¹²⁾ (2016.3.21.)¹³⁾

- 호주 정부는 신성장동력인 미래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 지원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을 통한 경제 강화
- 신생 핀테크 회사에 벤처캐피탈투자 감면세(concessional tax) 보장
-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를 통한 새로운 상품에 관한 정보 이용 및 접근성 활성화
- 디지털 화폐(비트코인)에 대한 이중과세(double GST) 문제 해소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 추진 예정
- 호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개혁을 제시함
-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크라우드펀드(Crowdfunding) 허용
- 쿨링오프(cooling off) 기간을 제거하고, 합법

9) 출처: 호주 재무부 장관 홈페이지, <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30-2016/>

10) 하퍼(Ian Harper)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호주 경쟁 정책 검토 패널(Competition Policy Review Panel)이 호주의 현 경쟁 정책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경쟁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콘텐츠 디지털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 저작권 및 경쟁 정책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발표됨

11) 출처: 호주 생산성위원회, <http://www.pc.gov.au/inquiries/current/superannuation/competitiveness-efficiency/issues>

12)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

13) 출처: 호주 재무부, <http://fintech.treasury.gov.au/>

적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는 재량을 사용하도록 플랫폼을 허용

- 개인 클라우드펀드 자격요건을 위한 호주 시장 면허(Australian Market Licence, AML) 검토

- 또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로보 어드바이스(robo-advice) 또는 디지털 금융 상품 어드바이스, 대출 상품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

- 호주 턴볼 정부, 재생 에너지 혁신을 위한 청정에너지혁신기금(Clean Energy Innovation Fund) 조성 (2016.3.23.)¹⁴⁾

- 호주 정부는 10억호주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새로운 청정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도울 계획이며, 공적자금 투자로 재정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 청정에너지혁신기금의 프로젝트는 대형 태양광발전, 해양 에너지, 바이오 연료,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등이며, 호주 신재생에너지청(ARENA)과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 두 부처가 청정에너지혁신기금을 운용

-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배출감소기금, 신재생에너지 목표, 국가에너지생산성계획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폭 넓은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호주정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맞설 것

이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6~28%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캐나다

1. 예산 · 결산 등

- 캐나다 재무부, FY2016 예산안(Budget 2016) 하원 상정(2016.3.22.)¹⁵⁾

- (예산기조) FY2016 예산안은 「중산층의 성장(Growing the Middle Class)」을 주제로 하며,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 하고, 중산층 및 중산층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조치를 포함

- FY2016 예산안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중산층을 위한 기회를 창출시키는 투자를 목표로 함

- (경제전망) 원유가격의 급락에 기인하여 2016년 실질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¹⁶⁾에 비해 하향 조정된 1.4%로 전망되나, 2017년 이후 전망은 지난 11월 전망과 유사할 전망

- 2016년 실업률은 지난 11월 전망보다 상향 조정된 7.1%로 전망,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6%일 것이며 이후 2% 수준을 유지할 전망

14) 출처: 호주 총리실, <http://www.pm.gov.au/media/2016-03-23/turnbull-government-taking-strong-new-approach-clean-and-renewable-energy>

15) <http://www.budget.gc.ca/2015/docs/plan/toc-tdm-eng.html>

16) '주요국 예산안 2016' 캐나다편 참조



〈표 5〉 캐나다 경제전망(2016년 2월 기준)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
실질GDP 성장률							
2015 Fall Update	1.3	2.0	2.2	2.2	2.0	2.0	2.1
Budget 2016	1.2	1.4	2.2	2.2	2.0	1.9	1.9
실업률							
2015 Fall Update	6.8	6.8	6.6	6.4	6.3	6.3	6.5
Budget 2016	6.9	7.1	6.9	6.5	6.4	6.3	6.6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015 Fall Update	1.2	2.0	2.1	2.0	1.9	2.0	2.0
Budget 2016	1.1	1.6	2.0	2.0	2.0	2.0	1.9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6(2016.3.22), Table A1.1 일부 발췌

- (재정전망) FY2016 예산안의 정책을 고려한 FY2016-17 재정적자는 294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0-21에는 143억캐나다달러에 이를 전망
- FY2016 예산안에서 정부는 6년간 총 502억캐나다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행할 전망
-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은 FY2017-18부터 점차 감소할 전망

〈표 6〉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총세입(GDP 대비 %)	2,912 (14.6)	2,877 (14.4)	3,020 (14.5)	3,153 (14.5)	3,293 (14.5)	3,444 (14.5)
총세출(GDP 대비 %)	2,966 (14.9)	3,171 (15.9)	3,310 (15.9)	3,380 (15.5)	3,470 (15.2)	3,586 (15.1)
프로그램지출	2,709 (13.6)	2,914 (14.6)	3,046 (14.6)	3,087 (14.2)	3,142 (13.8)	3,232 (13.6)
이자지출	257 (1.3)	257 (1.3)	264 (1.3)	294 (1.3)	328 (1.4)	355 (1.5)
재정수지(GDP 대비 %)	-54 (-0.3)	-294 (-1.5)	-290 (-1.4)	-228 (-1.0)	-177 (-0.8)	-143 (-0.6)
FY 2016 예산조치 ¹⁾ (Budget 2016 measures)	-31	-110	-135	-89	-67	-70
연방채무(GDP 대비 %)	6,193 (31.2)	6,487 (32.5)	6,777 (32.4)	7,005 (32.1)	7,182 (31.6)	7,325 (30.9)

주: 1) 이자지출에 대한 예산조치 영향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6(2016.3.22), Table 1

- (세입전망) FY2016-17 총세입은 경제전망 악화와 기타 세입의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2% 감소한 2,877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세출전망) FY2016-17 총세출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3,171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 FY2016-17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2,914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전년과 동일한 257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주요정책)
 - (중산층 강화) 신규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도입을 통한 혜택 확대 및 아동빈곤 구제, 중산층 감세 (중산층 개인소득세를 기존 22%에서 20.5%로 인하), 저소득 및 중위소득 학생 대상 고등교육 지원 확대, 고용보험 개선, 인프라 투자 등
 - (혁신적이고 깨끗한 경제) 고등교육기관 전략 투자 기금(Post-Secondary Institutions Strategic Investment Fund)에 3년간 20억캐나다달러, 저탄소 경제기금(Low Carbon Economy Fund)설립에 2년간 20억캐나다달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지원에 4년간 8억캐나다달러 투자 등
 - (포괄적이고 공정한 캐나다) 퇴역군인 및 노년층 지원, 원주민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 및 변화를 위해 5년간 84억캐나다달러 투자, 의료시스템 강화, 캐나다 문화 부문에 5년간 19억캐나다달러 투자 등
 - (세계 속의 캐나다) 캐나다 이민 시스템 처리기간 단축 및 정착 프로그램 기금 증가 등 이민자 지원, 국제 개발 및 평화 · 안보 프로그램에 투자 등
 -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 정부 업무 방식 및 서비스 개선, 세법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집행 보장 및 조세 시스템 무결성 개선을 위한 조치 제안 등
- (경제 및 고용 효과) FY2016 예산정책으로 인해 FY2016-17 실질 GDP가 0.5% 상승할 전망이며, FY2017-18까지 100,000개의 고용이 창출 또는 유지될 전망

〈표 7〉 FY2016 예산조치(Budget 2016 Measures)의 경제 및 고용 효과

(단위: %)

	FY2016-17	FY2017-18
주택 투자 조치(Housing investment measures)	0.1	0.1
인프라 투자(Infrastructure investment)	0.2	0.4
개인소득세 조치(Personal income tax measures)	0.0	0.0
중위소득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Measures for modest- and low-income households)	0.2	0.4
기타 지출 조치(Other spending measures)	0.1	0.2
법인소득세 조치(Corporate income tax measures)	0.0	0.0
총 GDP 효과	0.5	1.0
고용 효과(고용 창출 또는 유지)	43,000	100,000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6(2016.3.22.), Table 2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프랑스

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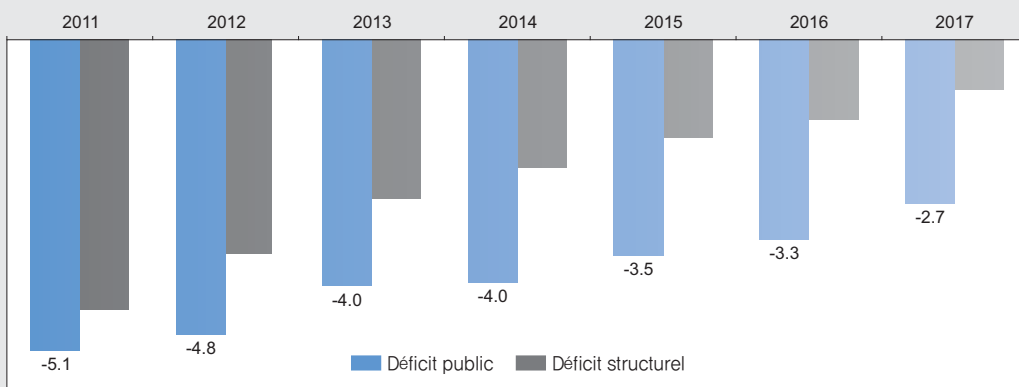
- 2016-2019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 발표(2016.4.13.)¹⁷⁾
 - 2016-17년 경제성장률은 2015-2018 안정화 프로그램의 전망치와 동일한 1.5%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할 전망
 - 재정적자는 2016년 GDP 대비 3.3%, 2017년 2.7%로 전망하여 2017년까지 GDP 대비 3.0% 이하 재정적자 감축 목표시한 유지, 이는 부채를 GDP 대비 100% 이하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건
 -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변동의 영향(기대보다 낮은 인플레이

선)을 상쇄하기 위해 2016년에 본예산안 대비 38억유로, 2017년에는 50억유로의 추가 지출 절감을 계획

- ☞ 2016년 인플레이션 영향 상쇄 조치: 규제, 공공부문 관리 등으로 중앙정부 지출 10억 유로, 사회보장지출 10억유로, 이자비용 18억유로 절감¹⁸⁾
- ☞ 2017년 인플레이션 영향 상쇄 조치: 모든 일반정부 하위부문에 걸쳐 부문별 지출 비중에 따라 50억유로 절감 노력 분담
- 부채는 재정적자 감축 노력과 성장 회복에 의해 2016년 GDP 대비 96.2%, 2017년 96.5%로 이전 전망치(2016년 96.5%, 2017년 96.9%)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재무부, programme de stabilité 2016-2019(2016.4.13.)

¹⁷⁾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programme-stabilite-2016-2019-tenir-les-engagements>

¹⁸⁾ 이러한 시정 조치는 가을에 발표되는 2017년 예산법안에서 자세히 설명될 예정

〈표 8〉 2016-2019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

(단위: GDP 대비 %)

	2015	2016	2017	2018	2019
GDP성장률(%)	1.2	1.5	1.5	1.75	1.9
인플레이션	0.0	0.1	1.0	1.4	1.75
가계소비	1.4	1.6	1.6	1.8	2.0
기업투자	2.0	3.2	3.8	4.7	5.0
재정수입	53.2	52.8	52.7	52.5	52.3
재정지출	56.8	56.0	55.3	54.4	53.5
재정수지	-3.5	-3.3	-2.7	-1.9	-1.2
구조적 재정수지	-1.6	-1.3	-0.8	-0.3	0.0
공공부채 ¹⁾	95.7	96.2	96.5	95.4	93.3
공공부채 ²⁾	92.7	93.2	93.7	92.6	90.6
조세부담률	44.5	44.2	44.0	43.8	43.5

주: 1)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 유로존 재정지원 제외

출처: 재무부, programme de stabilité 2016-2019(2016.4.13.)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터 연구원〉

독일

1. 기타

- 연방내각,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6」(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6)* 채택(2016.4.13.)¹⁹⁾

* EU 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매년 4월 동 보고서를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 Council)에 제출

- (경제전망)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임금인상, 저유가의 지속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2016년 1.7%, 2017년 1.5%로 전망

- (재정전망) 2012년 달성된 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이 2020년까지 유지되며, 국가부채 수준도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인 GDP 대비 60%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2015년 GDP 대비 0.8%의 일반정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12년부터 실행된 독일의 중기목표인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0.5% 기준은 2020년까지 유지될 전망

- (국가부채) 2016년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2.95%p 감소한 68.25%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으로 2020년에는 부채비율이

¹⁹⁾ 출처: 독일 재무부, Pressemitteilungen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6/04/2016-04-12-PM11.html>



50%대에 진입할 전망

- (재정정책)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growth friendly consolidation) 정책으로 교육, 과학, 연구, 교통인프라에 집중 투자
 - 또한, 광대역 통신망 투자와 난민수용 및 사회 통합 관련 지출 확대

〈표 9〉 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성장률	1.7	1.7	1.5	1.6	1.6	1.6
재정수지	0.7	0	0	0	0	0
구조적 재정수지	0.8	0	0	0	0	0
국가부채	71.2	68.25	65.75	63.5	61.25	59.5

출처: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6, 2016.4.13.

■ 독일 4대 경제 연구소*, 2016년 경제전망 발표 (2016.4.14.)²⁰⁾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DIW, Ifo Institute, IWH, RWI Essen)로 구성된 Joint Economic Forecast Project Group은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세계 및 독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공동발표

- (경제전망) 2016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 2017년 1.5%로 전망
 - 낮은 에너지 가격과 임금, 이전소득, 고용, 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의 상승이 기대됨
- (재정정책) 난민관련 비용 증가와 건설투자 등으로 부분적 확장 예상
 - 소득세, 법인세 및 사회기여금(social contribu-

tion)의 증가와 낮은 이자지출로 2016년 110억 유로, 2017년 100억유로의 예산 흑자 전망

〈표 10〉 경제 및 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실질 GDP 성장률	1.6	1.7	1.6	1.5
실업률	6.7	6.4	6.2	6.4
CPI	0.9	0.3	0.5	1.5
재정수지	0.3	0.7	0.4	0.3

출처: CESifo Group Munich 2016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일본

1. 예산·결산 등

■ FY2016 예산집행조사 실시(2016.4.5.)²¹⁾

- 2016년도 예산집행조사는 총 52건의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2016년도 개산요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6월 중순까지 조사결과 공표 예정

* 예산집행조사는 재무국 직원이 예산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지적하여 예산검토 및 집행을 효율화를 추구하는 작업

■ 아베총리 국무회의, 2016년 예산 조기집행 지시 (2016.4.5.)²²⁾

- 2016년도 예산의 조기집행 지시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12.1조엔의 80%인 약 10조엔에 대해 상반기에 계약완료료를 목표로 추진

20) 출처: Gemeinschaftsdiagnose, 2016 <http://www.cesifo-group.de/ifoHome/facts/Forecasts/Gemeinschaftsdiagnose/Archiv/GD-20160414.html>

21) 재무성, 「平成28年度予算執行調査対象事案一覧」http://www.mof.go.jp/budget/topics/budget_execution_audit/fy2016/sy2804/2804b.htm

22) 재무성, http://www.mof.go.jp/public_relations/conference/my20160405.htm

-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종종 조기집행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조기집행률을 기존 70%에서 80%로 높게 책정한 것은 이례적
- 조기집행 대상사업에는 도로, 고속철도(신칸센 등) 정비사업 및 동일본대지진복구사업 등이 포함되며 정부가 공사대금 등을 민간에 지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예정²³⁾

2. 기타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600조엔 경제실현을 위한 논의(2016.4.4.)²⁴⁾
 - 2016년도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과 더불어 '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에 중점
 - (결혼 · 출산 · 육아) '희망출산율1.8'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조성, 희망 취업자 920만명의 취업 실현을 위한 인적투자의 확충을 추진
 - (결혼 · 출산지원) 둘째,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 확충, 불임치료 지원, 지역저출산 중점추진교 부금의 확충
 - (보육 · 육아지원) 보육시설 대기아동의 해소를 위해 민간을 활용한 보육확대, 보육교사의 지속적 처우개선,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고부담금에 대한 검토
 - (취업촉진) 여성 · 고령자의 취업을 위한 취업 촉진수당²⁵⁾ 및 부양수당의 재검토 등을 통해

130만엔의 벽(대기업은 올해 10월부터 106만엔)²⁶⁾을 극복

- (성장전략의 가속화) 인재 · 설비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TPP에 대응해 해외시장과의 연계 강화, 외국인력의 활용을 추진
- (개인소비의 확대) 임금 · 가처분 소득의 인상, 건강 · 장수분야에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구축, 관광 · 여행 소비의 활성화, 주식을 활용한 소비 및 투자환기를 실시
- (경제재정시스템 구축)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행정절차의 간소화) 한국의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검토해 향후 1년 내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20% 증진
 - (세출효율화) 세출개혁의 성과를 지역의 육아 지원 등에 환원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자원배분의 효율화) '경제 · 재정재생프로그램'을 감안한 실효적인 PDCA를 구축해 가시화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23)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24) 내각부, 「骨太方針に向けて600兆円経済の実現」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6/0404/shiryo_01.pdf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6/0404/interview.html>

25) 특별회계를 통해 10만명을 대상으로 20만엔씩 사업주에게 배부

26) 일본정부는 배우자의 연간수입이 130만엔 이상이면 연금 ·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이러한 정책이 여성의 사회진출 의욕을 꺾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려고 하나 고소득 직장인의 배우자 보험료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반대의견 존재(출처: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6/0404/gijiyoushi.pdf>)



미국

1. 예산·결산 등

■ 미 의회예산처(CBO), FY2016 상반기 잠정(Preliminary) 재정 결산 발표(2016.4.7.)²⁷⁾

- 상반기 총 누적(2015.10.1.~2016.3.31.) 재정적자는 4,57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0억달러 상승하였고, 세입·세출 모두 전년(FY) 동기 대비 4% 증가

– (세입) 총 1조 4,78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0억달러 증가

☞ 세입 증가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득세는 350억달러 증가, 사회보험(140억달러)을 포함하면 총 490억달러 증가

☞ 기타 수입은 총 190억달러로 대부분이 FAS T(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P.L. 114-94)법에 의한 FRB(연방준비은행)로부터 전출된 잉여금을 포함하고 있음

– (세출) 총 1조 9,3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0억달러 증가

☞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억달러(5%), 120억달러(4%) 증가. 이 중 메디케이드 지출 증가는 건강보험법(ACA)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등록자 수 증가에 기인

☞ 공공채무 순이자지출(net interest on the public debt)은 전년 동기 대비 200억달러(19%) 증가

〈표 11〉 FY2016 상반기 재정 잠정 결산

(단위: 십억달러)

구분	FY 2015 상반기 (A)	FY 2016 상반기 (B)	증가 (B-A)
재정수입	1,420	1,478	58
재정지출	1,859	1,935	76
재정적자	439	457	18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for March 2016, April 7 2016.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²⁷⁾ <https://www.cbo.gov/publication/51442>

| 정책 흐름 |



- 브렉시트에 따른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계획
-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
- 2016년 세법개정안

브렉시트에 따른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계획

* 본 자료는 2016년 8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에서 발표한 「브렉시트에 따른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계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보호무역주의, 저성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제182차 대경장안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상·금융 등 중장기 대응방안 구체화를 위해

- 기획재정부는 ① 연구용역, ② 전문가 간담회, ③ 국내 관계기관간 정책협의 및 ④ 한-EU·한-영 간 협의채널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

■ 브렉시트 투표(6.23일) 직후 나타난 급격한 시장 불안은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에 힘입어 조기에 진정되었으나,

- 英-EU 간 협상, 유럽 내 여건 변화 등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유동적이며
- 최근 보호무역주의, 저성장* 심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 '16.7월 IMF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세

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16년 3.2% → 3.1%, '17년 3.5% → 3.4%)

■ 이에 우리 정부는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7.8일)를 통해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 ① 대외리스크에 대한 경제안전판을 강화하고,
- ② 국제공조 및 대외소통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 ③ 브렉시트 이후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지속 점검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① 브렉시트의 우리경제 및 세계경제에의 파급효과, 영-EU 간 협상 전개 시나리오별 글로벌 무역구조·통상환경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 ② 현재 구성 중인 ‘국제금융발전 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학계·업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상시 수렴하며

* 제1차 ‘국제금융발전 심의회’ 조속히 가동(8월 하순 이후) 등

- ③ 브렉시트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정책을 발표·추진하는 한편,

* 필요시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TF 설치·운영

- ④ 한-EU 간 경제대화(9월, 브뤼셀)·FTA 서비스 이행위(하반기, 서울), 한-영 간 국제국장회의·고위급 면담* 등 한-EU, 한-영 간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영·EU 등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

* 부총리와 영국대사(7.1일) 및 로드메이어(런던시티시장, 7.18일) 면담 既 개최

⇒ 이를 통해 브렉시트 가결 이후 보호무역주의 흐름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외부문 전략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

* 본 자료는 2016년 8월 10일 국세청에서 부서공동으로 발표한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8.10.(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

①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

②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

-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 조사건수(건) : ('13) 18,079 → ('14) 17,033 → ('15) 17,003 → ('16.예상) 17,000 수준

사후검증 건수(건) : ('13) 102,000 → ('14) 70,000 → ('15) 32,000 → ('16.예상) 22,000

- 특히, 사후검증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 세무검증을 최소화

③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 과세 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과세품질 혁신
-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중요소송·심판 대응 강화

④ 준법·청렴·소통의 문화를 확고히 정착

- 「청탁금지법」 시행('16.9월)에 대비하여 규정·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강화 등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적극 실천
- 다양한 소통채널 활성화로 조직 내부의 개방·공유·소통 문화 확산

2016년 세법개정안

* 본 자료는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1. 경제·재정 여건

- **(경제여건)** 최근 생산·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며 민간 활력 미흡

* 수출(전년 동월비, %) : ('16.1)△19.1 (2)△13.0 (3)△8.1 (4)△11.2 (5)△6.0

* 설비투자(전년 동월비, %): ('16.1)△6.0 (2)△7.9 (3)△7.2 (4)△2.8 (5) 2.9

-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 약화

- **(재정여건)**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복지지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 소매판매(전년 동월비, %) : ('16.1)4.6 (2)3.2 (3)5.8 (4)4.2 (5) 5.1

* 세입실적: '16.1~5월 누계 112.7조원으로 전년 동기(93.7조원) 대비 19조원 증가

2. '16년 세법개정 방향

-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와 함께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
 -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산업 중심 지원 강화,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 **(공평과세)**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등
 -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등

참고 금년도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 금년 세법개정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

-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 세제지원 강화,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

-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투자 여건 개선,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등 공평과세를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 경쟁력 강화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중장기 방향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금년도 개정안 기본 방향·추진 전략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 기업구조 조정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 농어민 등 지원	- 과세기반 확충 - 역외세원 확보 - 가계소득 증대 세제 개선	-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편의 제고 - 세제 합리화	

II. 주요 개정내용

1 경제활력 제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 신성장산업 R&D 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 미래형 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SW 및 보안, ④ 콘텐츠, ⑤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 에너지 신산업·환경, ⑨ 융복합 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2상

(개정) 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회귀질환은 국외 수행도 적용)

-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투자금액의 90%→100%) 확대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투자금액의 90% 한도)

** (현행) 고도기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기술사용 비율만큼 감면)

(개정) 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

■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 확대
 - * (현행) 게임·영화 등 콘텐츠 기술 → (추가) 음악·웹툰 등 콘텐츠 기술

■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5%)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취득시 공제율 인상(7%→10%)

■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신설(400만원 한도)
 - * 현재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30%) 신설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

* 추가업종 예: ①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②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③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④ 부동산 중개업, ⑤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 신규 적용,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
 - * 내국인이 투자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마이스터고교 등 졸업자	2,000만원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인 자	1,500만원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원	1,500만원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를 '17.12.31일까지 연장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 (완전복귀) 모든 기업에 소득·법인세 100%(5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면제
(부분복귀) 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 100%(3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50% 감면
-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적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	- (추가) 중견기업
적용요건 완화 (부분복귀)	- 국내사업장이 없을 것	-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해외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시 허용
적용지역 확대	- 비수도권	- (추가) 수도권 중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100%, 50%) 한도액도 확대
* (현행) 완전복귀 2억원, 부분복귀 1억원 → (개정)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

■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 * (임주기업)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법인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중 선택 허용

구 분	현 행 (①+②)	개 정 (②)
① 금액기준	- 투자누계액 × 50%	-
② 고용기준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투자누계액 × 20% 한도)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투자누계액 × 100% 한도)

3.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현재는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해 소득공제(10%~100%)
**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 확대(행사가격 연간 1억원 → 3년간 5억원)
*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 대신 양도소득세(10%, 20%) 납부 선택 가능
-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시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 주식인수 50% 초과 - 현금지급비율 80% 초과 - 합병대가 주식배정 금지	- 주식인수 30% 초과+경영권 인수 - 현금지급비율 50% 초과 - 주식배정 일부 허용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 투자전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 PEF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PEF의 벤처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벤처자금 선순환 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주식 양도 규모	- 보유주식의 80% 이상	- 30% 이상
재투자기한	- 주식양도일부터 6개월	- 예정신고기한일부터 6개월
과세특례 대상	- 최대주주인 창업자	- 창업자 및 발기인

-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소득 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설비투자 촉진 지원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17.6.30일까지 연장
* 중소기업이 '16.6.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
-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감면율 50%)을 '18.12.31일까지 연장
- 에너지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용으로 수입된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를 '19.12.31일까지 연장
- 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환경정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

■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 *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납부유예(적용대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 시내환급 청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

확인

-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17.12.31일까지 연장
* 성형수술 등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부가가치세 환급('16.4.1일부터 1년간)
- 면세점(보세판매장)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및 갱신허용

4. 기업구조조정 지원

■ 해운업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토세* 적용 포기 허용
*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토수·운항일수 기준 법인세 납부(신청시 5년간 적용)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 허용
* 현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손금산입

■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 국책은행(산은, 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 신설)

■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완화(80%→70% 이상)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사후관리 완화

-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허용
-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 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시 채무자(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

■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현재는 무기한 의무 보유)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 확대
* (현행)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
(개정)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
- 합병 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축소
-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합병으로 받은 신주가액과구주 취득가액 간 차액
-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 확대

현행	개정
○ 분할시 과세이연 되는 주식의 범위 -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추가>	-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외국기업지배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업(해외 자회사) 주식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 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확대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동일사업 → (개정) 세분류상 동일사업

■ 고위험고수의 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 과세 적용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의 투자신탁 과세특례를 '17.12.31일까지 연장

2 민생안정

1. 서민·중산층 지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비율(15%, 30%)을 소득공제
-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

총급여액	현 행	개 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300만원 (‘19.1.1일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 지급(’09년부터 지급)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 → 77, (홀벌이) 170 → 185, (맞벌이) 210 → 230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

* (현행) 일시적 2주택 → (개정) 2주택 보유(재산가액 1.4억원 미만 요건은 유지)

■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 연장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250원/ℓ), LPG(161원/ℓ)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

-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원 → 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 현재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한 연도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 현재는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를 확대 (50% → 100%)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을 완화**

*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현행) 퇴직후 3~5년 이내 → (개정) 퇴직후 3~10년 이내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

*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2%p 인상(10% → 12%)

-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

*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

■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시 세제지원 신설
 - (대상주택) 임대운영 15년/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
 - (지원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및 주식양도차익 특별공제*
- *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의 9%(3년 이상 ~90%(30년 이상) 공제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18.12.31일까지 연장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19.12.31일까지 연장
 -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일반임대 30%, 준공공·기업형 임대 75%(의무임대기간) 일반임대 4년, 준공공·기업형임대 8년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 * 현재는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2.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하고 적용기한 연장

-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공제율 : 음식점업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 4/104, 일반업종 2/102
-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12.31일까지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액 한도

구분	매출액(6개월)	기본	음식점업 (*16년 말 → '18년 말까지)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6년 말까지 35% → '18년 말까지)	

■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폐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9/109)를 '18.12.31일까지 연장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공제율 1~2%, 다만 '16년 말까지는 우대공제율 1.3~2.6% 적용)
-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

율을 '18.12.31일까지 연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를 '19.12.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

* 현재는 연구·인력개발 등 특정분야에 한정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의 고용·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10%)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 산세(2%)를 폐지
-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후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접대비 한도 특례(기본금액 1,800만원→2,400만원)를 '18.12.31일까지 연장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을 '19.12.31일까지 연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업장

3. 농어민 등 지원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

-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어선 동력장치) 추가

■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 *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 폐지(단,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

*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내)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
- * 현재 농·어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
- 임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제외

* 현재 장애인인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장애인신탁(5억원 한도)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제외

-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세액공제율(운영비의 20%→30%) 및 공제기간(5년→7년) 확대

* 현재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시 5년간 운영비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3 공평 과세

1. 과세기반 확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18.4월부터 시행)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 1%, 1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 2%, 15억원
(코넥스) 지분율 4%, 종목별 보유액 10억원(현행유지)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 1년 유예('18.4월부터 시행)

-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지분율 2%→4%)
- 다만, 종목별 보유액 기준은 코스피와 일치

■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 정비

-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17.4월부터 시행)

* Equity Linked Warrant: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시점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 외국인근로자는 종합과세(6~38%) 대신 공제 없이 17% 특별세율 선택 가능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별세율을 17%→19%로 조정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사업연도 소득의 80%)

■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 (10%)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 현재는 자동차 취득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추가(52개→55개 업종)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발급의무 (미발급 시 과태료)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

* 기재부 내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회계제도 운영체제 마련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이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 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5%, 10%)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 정책목적은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일몰 종료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일몰종료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포물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특례 일몰종료

* 대회 시설의 제작·건설 등을 위해 수입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등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참고 '16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금심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비·재설계

– 다만, 서민·중소기업·투자 등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몰 연장

* 일몰도래 25개 항목 중 단순종료 4개, 재설계(축소 3개, 조정 4개), 일몰 연장 14개 [총 7개 정비→정비율 28%]

구분		조세감면 내용	정비·재설계 사유
일몰종료		• 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투자실적 미미
		• 포물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최근 적용실적 없음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정책목적 달성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협중앙회 분할완료 예정
재설계	축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세율 인상(17% → 19%)	과세형평 제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차등 등	근로자 세부담 경감 등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 대상시설 축소 조정(시행령)	세제지원 효율화
	조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 기금사용목적 삭제	상생협력기금 출연 유도 지속
		• 석유제품 전가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에 매수자 추가	유가인하 및 석유시장 유통개선 지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한도 고용비중 강화	고용창출 유인 강화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추가	교육·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

참고 '16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계속>

구분	조세감면 내용	정비·재설계 사유
일몰연장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유도 지속
	• 지방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취약계층 지원
	• 부동산리츠등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과세특례	임대주택투자유도 유지
	•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자금사정 곤란 기업 지원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서민주거안정 지원
	•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산학협력 지원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유망신산업 분야 지원
	• 금사업자·스크랩등사업자의 세액공제	매입자납부특례 정착 지원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수출·투자 지원
	•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환경투자 유도 지속
	• 경형자동차 연료 유류세 환급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2. 역외세원 확보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구 분	내 용
제출대상	-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
작성내용	- 다국적기업의 당해연도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 (매출액·수익·종업원 수·자산현황 등), 세금납부 현황 등
제출기한	- 모회사 사업연도말 기준 12개월 이내

* 이전가격 문서화 3종 보고서(OECD 권고) 중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15년 12월 31일

- '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해 '17년 말까지 제출, '18년부터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

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

* 현재 44개국 가입, 우리나라도 '16.6.30일 동 협정 가입

■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도입

-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일명 '국외전출세') 도입
 -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 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세율: 20%)

* '18.1월부터 시행

*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유사제도 운영 중이고 OECD·EU도 도입 권고

■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전환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 증여 시 과세방법을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

* 해외금융계좌,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 *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 가능
- 조세조약(예: 한-인도)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과세(지급액의 3%)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5년)
- 납세자가 국제거래가격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철회일로부터 1년은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
- *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과세연도분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한 후 납세자가 추후 신청을 철회하면 부과제척기간 도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불가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국가별보고서와의 제출기한 일치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개별·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
- * (현행) 사업연도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12개월 이내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 * 투자·임금증가·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 10%)
투자포함형: (소득의 80% - 투자·임금증가·배당) × 10%
투자제외형: (소득의 30% - 임금증가·배당) × 10%
-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 조정
* (현행) 투자·임금증가·배당 1:1:1 → (개정) 1:1.5:0.8
-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
* 현재 투자제외형 선택시 3년간 변경 불가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

■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14% → 9%)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주주는 25% 분리과세
-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 신설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 *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
*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개정)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중 선택 가능

4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보호

■ 가산세 부담 완화

-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 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액×2% → 1%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지급금액×2%(3월 이내 1%) → 1%(3월 이내 0.5%)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1% → 0.5%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 0.5%

■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

-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

* 현재는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심의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

■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

- 수입신고된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일정요건* 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 허용

* 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 작성·제출 등

■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
- *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확인 필요시, 주문에 기재된 범위·기간 내에서 처분청이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경정하게 하는 결정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 관세조사·불복 절차 개선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전 7일 → 10일로 연장
- 관세불복 청구금액이 소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

* (현행) 변호사, 관세사 → (추가)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2. 납세편의 제고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분기별) → 연 2회(반기별)로 축소(18년부터 시행)

■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 체납정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 예술품 등*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공매대행을 허용(17.7월부터 시행)

* 미술품, 도자기, 골동품 등 공매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동산

■ 관세감면 절차 개선

- 관세가 감면되는 대형제조설비 등을 공장 등 당해 설비가 설치·사용되는 장소로 반입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

* (현행) 수입신고 수리 후 1개월 내 → (개정) 최대 3개월 내

■ 개정된 국제기준(HS 2017*)에 따른 관세율표 개정

* 세계관세기구(WCO)는 상품교역·관세행정의 국제적 기준인 품목분류(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을 5년마다 개정

- 새로운 국제협약(HS 2017) 품목분류체계의 국내법 반영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목분류 및 정확한 무역통계 기반 제공

*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 품목을 신설·삭제·변경(6,710 → 6,890개 확대)

■ 조세법령 새로 쓰기*

* '11년부터 조세법령을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새로 쓰는 작업을 추진 중

-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국세기본법」 등 주요 조세 법령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단계적으로 추진

* 금년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상속·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가산세·환급(「국세기본법」) 부분을 대상으로 추진

3. 세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200억원~500억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법인 간 형평성 제고

– (가업상속재산가액)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

*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가액/법인: 주식가액(순자산 개념)

– (자산처분 제한)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

*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법인: 주식 처분 제한 & 사업용 고정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17.4월부터 시행)

구 분	현 행	개 정
저열량탄(5,000kcal/kg 미만)	21원/kg(탄력)	27원/kg(탄력)
중열량탄(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	24원/kg(기본)	30원/kg(기본)
고열량탄(5,500kcal/kg 이상)	27원/kg(탄력)	33원/kg(탄력)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인하(0.5%→0.3%)
 -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18.12.31일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16.1.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16.1.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
-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범위 확대

- * 현재는 보증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만 손금산입 가능
 -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이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도 손금으로 인정
- * 다만,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연간 +3,171억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3,171억원
- **(증가 요인)**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조정 등
-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단위: 억원)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후
계	3,171	2,461	△5,196	4,872	1,552	△518
소득세	△1,027	△655	△6,011	4,950	689	-
법인세	51	△80	△136	△30	832	△535
부가가치세	△391	△207	△184	-	-	-
기타	4,538	3,403	1,135	△48	31	17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 ¹⁾ /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²⁾	기타 ³⁾	계
△3,805	7,252	△276	3,171

주: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6,100만원 이하)

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효과 포함

3)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 서민·중산층(△2,442), 중소기업(△1,363), 고소득자(1,009), 대기업(6,243)

Ⅳ. 추진일정

1. 개정대상법률 : 총 13개

- 내국세(11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 관세(2개)
 -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2. 추진일정

- 7.28(목), 세법개정안 발표
- 7.29(금)~8.18(목)(20일간), 입법예고
-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9.2(금), 정기국회 제출

재정포럼

2016년 8월호 통권 제242호

- 발 행 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 행 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김준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6년 8월 16일 발행 / 제20권 제8호(통권 제24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 인 쇄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지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 금 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